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 해양수산부 소관 】

I .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1. 2024년도 결산 총괄	1
2. 세입·세출 개요	3
가. 세 입	3
나. 세 출	4
3. 기금 개요	6
가. 수 입	6
나. 지 출	7
4. 재무회계	8
가. 재정상태	8
나. 재정운영	10
다. 순자산변동	12

II.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3

1. 일반회계 13

가. 개 요 13

1) 세입결산 13

2) 세출결산 15

나. 총괄 검토의견 17

1) 2024년도 신규사업 중 미집행 사업: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적기 사업추진에 주의할 필요 17

2)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실행률 50% 미만사업: 「보조금법령」 준수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1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8

1) 해양정원 조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1031-307) 28

2)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 관련법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 부적절(2031-308) 34

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및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2031-312) 39

(1)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연례적 예산 이월 40

(2)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의 예산 이월 42

4)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 : 기술용역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 운영제도 개선 필요(2033-300) 46

5)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다부처 사업 추진 시 부처 간 사전 조정 및 협의 필요(2046-347)	55
6)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 록 철저한 관리 필요(5067-301)	58
7)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 : 보조금관리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6131-305)	64
8) 기본경비(비총액): 연례적인 예산변경을 통한 집행 시정 필요(7111-250)	74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8

가. 개 요 78

1) 세입결산	78
2) 세출결산	8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82

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보조금법령」 취지에 부합한 집행 필요 (3040-317)	82
2) 양식장임대 : 임차인의 수요를 고려한 양식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347-367)	91
3) 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사업: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재발 주의 필요(3440-372)	99
4) 수산 공익직불제: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3460-310)	104
5)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시험연구비 비목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편 성 시정(6133-308)	113

3. 교통시설특별회계	120
가. 개 요	120
1) 세입결산	120
2) 세출결산	122
나. 총괄 검토의견	124
1)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 리 강화 필요(5000)	124
(1)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 세부사업 예산 전액 불용 부적절	125
(2) 새만금 신항(방파제(연장) 내역사업)·기타항만 재개발(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 : 내역사업 예산 전액 불용 또는 이월 부적절	128
(3) 부산항 신항만(1단계)(용원수로 정비 내역사업)·울릉(사동)항(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내역사업)·여수신북항(여수신북항 건축 내역사업) : 내역사 업의 과다한 예산 이·전용 부적절	134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9
1) 항만보안시설 확충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및 예산 전 용을 통한 연도말 자산취득비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적절(5064-303)	139
(1)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140
(2) 예산 전용을 통한 연도말 자산취득비 집행 및 이월 지양	143
2) 일반항·포항 영일만신항·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조 사설계비로 집행 부적절(5059-302)	147
3) 부산항 :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5058-307)	159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8
가. 개 요	168
1) 세입결산	168
2) 세출결산	169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0
가. 개 요	170
1) 세입결산	170
2) 세출결산	171
6. 수산발전기금	173
가. 개 요	173
1) 수입결산	173
2) 지출결산	17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77
1) 해양폐기물 정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065-301)	177
2)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1065-304)	184
3)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융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3465-302)	188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I.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2024년도 결산 총괄

-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 및 수산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2조 6,931억 5,700만원이며, 2조 8,421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7,786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622억 5,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4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849,757	1,947,691	1,900,161	1,301	46,230	50,404
기 금	843,400	894,495	878,467	3	16,025	35,067
총 계	2,693,157	2,842,186	2,778,628	1,304	62,255	85,471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7조 4,447억 4,500만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세출예산현액은 7조 6,899억 4,800만원으로, 이 중 7조 1,459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2,00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38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예산	7,447,145	242,803	-	-	96,631 △96,631	7,689,948	7,145,946	200,150	343,852
기금	843,400	3,866	-	-	32 △32	847,266	878,467	16,133	168,864
총계	8,290,545	246,669	-	-	96,663 △96,663	8,537,214	8,024,413	216,283	512,716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조 8,497억 5,700만원이며, 1조 9,476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조 9,001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62억 3,000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53,279	63,633	58,179	12	5,441	5,440
농특회계 ¹⁾	31,820	66,734	50,436	-	16,298	18,616
교특회계 ²⁾	1,753,070	1,808,700	1,786,484	1,289	20,928	33,414
에특회계 ³⁾	3,851	5,159	2,788	-	2,371	△1,063
지특회계 ⁴⁾	7,737	3,465	2,273	-	1,193	△5,464
합 계	1,849,757	1,947,691	1,900,161	1,301	46,230	50,404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 미수납액 462억 3,000만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219억), 관계기관 예산부족(203억), 납기 미도래(33억) 등임.

-
-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 교통시설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나. 세 출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조 4,471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28억 3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6,899억 4,800만원임.

【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일반회계	3,447,126	89,062	-	-	13,448 △13,448	3,536,188	3,372,651	20,800	142,737
농특회계	1,679,937	37,104	-	-	858 △858	1,717,041	1,598,213	73,744	45,084
교특회계	1,753,070	94,492	-	-	82,325 △82,325	1,847,562	1,600,200	101,904	145,458
예특회계	63,251	-	-	-	-	63,251	57,869	-	5,382
지특회계	503,761	22,145	-	-	-	525,906	517,013	3,702	5,191
총계	7,447,145	242,803	-	-	96,631 △96,631	7,689,948	7,145,947	200,150	343,852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전용액 966억 3,100만원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항만건설예산 조정 823억원, 양식업 보상금 지급 대응 용역 등 9억원, 인건비·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액 기관간 전용 등 134억원으로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 7조 6,899억 4,800만원 중 7조 1,459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농특회계 및 교특회계에서 절대공기 부족(1,199억원) 등으로 2,001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2,929억원) 및 지급사유 미발생(487억원) 등으로 3,438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기금 개요

가. 수 입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발전기금의 2024회계연도 총 수입계획액은 8,434억원이며, 8,944억 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784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등)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160억 2,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이므로 3백만원 불납결손 되었음

【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수입 계획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대비 수납증감 (B-A)
	당초	변경 (A)					
수산발전기금	843,400	843,400	894,495	878,467	16,025	3	35,067
합 계	843,400	843,400	894,495	878,467	16,025	3	35,067
사업운용수입 (수산발전기금)	626,468	626,468	618,161	602,133	16,025	3	△24,335
정부내부수입 (수산발전기금)	100,000	100,000	-	-	-	-	△100,000
여유자금회수 (수산발전기금)	116,932	116,932	276,334	276,334	-	-	159,402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지 출

□ 수산발전기금의 총 지출계획액은 8,43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8억 6,600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8,472억 6,600만원으로, 이 중 8,784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61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88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 초	변 경					
수산발전기금	843,400	843,400	3,866	847,266	878,467	16,133	168,864
총 계	843,400	843,400	3,866	847,266	878,467	16,133	168,864
일 반 지 출 (수산발전기금)	810,011	810,011	3,866	813,877	630,880	16,133	166,864
정부 내부지출 (수산발전기금)	2,000	2,000	-	2,000	-	-	2,000
합 계	812,011	812,011	3,866	815,877	630,880	16,133	168,864
여유자금운용 (수산발전기금)	31,389	31,389	-	31,389	247,587	-	-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 다음연도 이월액 161억 3,300만원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총사업비 조정기간 소요 및 실시설계 지연 등에 따른 것임.

□ 불용액 1,688억 6,400만원은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재해등대 응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777억 8,500만원, 비축사업 551억 7,600만원 등임.

4.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8,771,981	37,866,457	905,524	2.4%
유동자산	1,209,540	895,184	314,356	35.1%
투자자산	2,086,275	2,304,219	△ 217,944	△ 9.5%
일반유형자산	7,418,105	7,153,874	264,231	3.7%
사회기반시설	27,631,131	27,078,548	552,583	2.0%
무형자산	35,219	44,086	△ 8,867	△ 20.1 %
기타비유동자산	391,711	390,546	1,165	0.3 %
부 채	163,894	157,513	6,381	4.1%
유동부채	100,651	102,365	△ 1,714	△ 1.7 %
장기차입부채	592	550	42	7.6 %
장기충당부채	17,390	3,145	14,245	452.9 %
기타비유동부채	45,261	51,453	△ 6,192	△ 12.0 %
순자산	38,608,087	37,708,944	899,143	2.4 %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4년 말 기준 해양수산부의 자산은 38조 7,719억 8,100만원으로 전기 대비 9,055억 2,400만원 증가(2.4%)하였음.
- 기타유동자산이 1,015 4,705만원(22.5%) 증가함에 따라 유동자산 총계는 3,143억 5,600만원 증가(35.1%)하였고,
-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국가어항이 1,903억 2,100만원(△9.0%) 감소하였으나, 항만이 722억 1,100만원(0.3%) 증가하였고,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 6,702억 4,100만원(19.1%) 증가함에 따라 총계는 5,525억 8,300만원 증가(2.0%)하였음.
- 2024년 말 기준 해양수산부의 부채는 1,638억 9,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3억 8,100만원 증가(4.1%)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38조 6,080억 8,600만원으로 전기 대비 8,991억 4,200만원 증가(2.4%)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4,365,927	4,616,361	△250,434	△5.4
II. 관리운영비	457,511	452,800	4,711	1.0
III. 비배분비용	25,636	297,842	△272,206	△91.4
IV. 비배분수익	216,767	191,809	24,958	13.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632,308	5,175,194	△542,886	△10.5
VI. 비교환수익 등	73,369	98,143	△24,774	△25.2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558,938	5,077,051	△518,113	△10.2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4년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4조 9,035억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5,375억원을 차감한 4조 3,659억 2,700만원으로 전기 대비 2,504억 3,400만원 감소(5.4%)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173억원과 그 밖의 경비 1,402억원으로, 전기 대비 47억 1,100만원 증가(1.0%)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1억 7,900만원, 대손상각비 24억원, 기타비용 2,236억원 등이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988억원, 기타수익 1,060억원 등으로 구성됨.

□ 비교환수익 등은 부담금수익 628억원, 기타비교환수익 96억원 등으로, 전기 대비 247억 7,400만원 감소(25.2%)한 733억 6,900만원임.

□ 재정운영순원가는 4조 6,323억원이며,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기 대비 5,181억 1,300만원 감소(10.2%)한 4조 5,589억 3,800만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5,706,307	25,207,118	6,795,520	37,708,944
II. 재정운영결과	-	4,558,938	-	4,558,938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	5,541,505	-	5,541,505
IV. 조정항목	-	-	△83,423	△83,423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5,706,307	26,189,683	6,712,096	38,608,087

* 자료 : 해양수산부

□ 기초순자산은 전기 대비 4,291억 2,300만원 증가(2.3%)한 37조 7,089억 4,400만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는 4조 5,589억 3,800만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5조 5,415억 5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 7조 3,691억원, 재원의 이전 1조 8,276억원이며,

조정항목은 834억 2,300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손익 6억원, 자산재평가 이익 827억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포함한 기말순자산은 38조 6,080억 8,700만원임.

II.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도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 384억 6,200만원, 재산수입 47억 1,8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6억 3,100만원 등 532억 7,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 및 경상이전수입 증가로 49억원이 증가한 581억 7,9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636억 3,3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394억 5,400만원, 재산수입으로 112억 2,0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으로 621억 2,000만원 등 총 581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54억 4,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4,718	11,886	11,220	1	665	6,502
토지대여료	2,825	2,924	2,489	1	435	△336
건물대여료	254	94	86	-	9	△168
기타관유물대여료	34	2	2	-	-	△32
기타재산이자수입	1,603	8,866	8,644	-	222	7,04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2	-	-	-	-	△2
경상이전수입	38,462	42,803	39,454	12	3,338	992
벌금및과료	2	8	-	-	8	△2
과태료	151	125	73	-	52	△78
징계부과금	17	22	2	-	20	△15
과징금	34	28	22	-	7	△12
변상금	79	145	5	12	128	△74
위약금	169	718	591	-	128	422
가산금	31	211	19	-	192	△12
기타경상이전수입	37,979	41,544	38,741	-	2,803	76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631	6,354	6,212	-	143	△1,419
면허료및수수료	15	232	231	-	1	216
항공항만수입	5,919	4,044	4,020	-	24	△1,899
실습수입	130	27	27	-	-	△103
기타잡수입	1,567	2,052	1,934	-	117	367
수입대체경비	368	209	167	-	43	△201
기타잡수입	368	209	167	-	43	△201
관유물매각대	1,727	1,102	1,102	-	-	△625
기계기구매각대	10	200	200	-	-	19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849	902	902	-	-	53
토지매각대	666	-	-	-	-	△666
재고자산매각대	202	-	-	-	-	△202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73	1,278	25	-	1,253	△348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373	1,278	25	-	1,253	△348
합 계	53,279	63,633	58,179	12	5,441	4,900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3조 4,471억 2,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90억 6,2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5,361억 8,8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1,326억 2,000만원,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1,290억 6,500만원, 어업인 소득안정지원 83억 3,400만원, 출연연구기관지원 2,063억 6,100만원,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5,048억 5,000만원, 해양수산 행정지원 2,505억 6,500만원, 해양환경보전 1,433억 7,6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1,451억 4,3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66억 1,100만원,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50억 7,500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71억 6,0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61억 2,9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657	-	-	-	-	1,657	1,657	-	-
수산연구 (국립수산물과학원)	132,598	5,757	-	-	528 △528	138,355	132,620	3,390	2,345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118,773	42,985	-	-	-	161,758	129,065	5,075	27,618
수산행정	110,625	404	-	-	1,029 △1,029	111,029	110,424	229	375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8,334	-	-	-	-	8,334	8,334	-	-
원양협력	3,007	-	-	-	-	3,007	3,007	-	-
책임운영기관운 영(국립해양측위 정보원)	4,024	7	-	-	77 △77	4,031	3,974	26	32
출연연구기관 지원	208,244	-	-	-	-	208,244	206,361	-	1,883
항만개발 및 관리	21,571	29	-	-	-	21,600	21,598	-	1
해양 및 해상교 통관리	89,877	2,147	-	-	-	92,024	91,076	331	617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507,047	18,343	-	-	-	525,390	504,850	6,611	13,930
해양수산연구개발	79,926	642	-	-	-	80,568	80,408	81	79
해양수산연수	4,635	61	-	-	-	4,696	4,472	63	160
해양수산 정보화	45,146	1,748	-	-	-	46,894	43,878	1,446	1,571
해양수산 행정지원	253,840	1,275	-	-	931 △931	255,115	250,565	1,149	3,401
해양환경보전	141,003	9,824	-	-	8 △8	150,827	143,376	291	7,160
해운산업 선진화	147,539	5,841	-	-	362 △362	153,380	145,143	2,108	6,129
회계간거래 (전출금)	1,569,280	-	-	-	-	1,569,280	1,491,844	-	77,436
합 계	3,447,126	89,062	-	-	13,448 △13,448	3,536,188	3,372,651	20,800	142,737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총괄 검토의견

1) 2024년도 신규사업 중 미집행 사업: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적기 사업추진에 주의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신규 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사업 중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3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1,121억 4,000만원)의 84.5%인 95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신규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31개 신규 사업 결산 현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112,140	△ 3,821	108,319	91,538	84.5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사업 중 2024년도 신규로 추진된 7개 세부사업의 13개 내역사업에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신규 예산 사업을 편성할 때에는 기존 사업 대비 효과성, 중복 여부,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경제성 및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특히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재정지출 10% 이상 감축 등 강력한 지출혁신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⁵⁾ 보조사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을 대체·축소하는 선에서만 신규 사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2024년도 신규 추진 사업 중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13개 내역 사업의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7개 내역사업)이었으며, 그 외 지역주민 민원 등에 따른 사업 변경(경주 전동지구 연안정비, 진해신항 배후단지)과 다부처 사업 중 주관부처 예산 미확보(친환경선박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또는 절대공기 부족(진해신항 임항도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는 향후 신규 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타당성 있는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3.28.

【 2024년도 신규사업 중 집행률 0%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예산액 (A)	결산 (B)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일반회계	(다부처)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1,080	-	-	다부처 사업(방사청, 해수부, 과기부)으로 주관부처인 방사청 예산 미확보로 다부처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종료 의결('24.6.)	-
농특회계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연어류밋스틸헤드 등양식산업화사업	326	-	-	지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차년도 이월	913
교특회계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상부시설 조성	100	-	-	사업대상지 관련 토지이용 계획 등 지자체 간 협의 지연, 잔여구간 매립시행 (지자체, '24.12~'25.3)에 따른 발주 지연	100
		진해신항 준설 실시설계 환경영향 평가용역	5	-	-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간 소요로 용역 발주 지연	800
	부산항 진해신항	진해신항 준설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4	-	-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간 소요로 용역 발주 지연	80
		진해신항 준설 실시설계 용역	20	-	-	총사업비 협의기간 장기간 소요로 용역 발주 지연	2,000
		진해신항 서컨 배후단지 환경영향 평가용역	60	-	-	실시설계 시행주체 결정(민간)에 따른 관련 용역비 불용	-
		진해신항 서컨배후단지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40	-	-	실시설계 시행주체 결정(민간)에 따른 관련 용역비 불용	-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예산액 (A)	결산 (B)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진해신항 서컨배후 단지 실시설계 용역	300	-	-	실시설계 시행주체 결정(민간)에 따른 관련 용역비 불용	-
		진해신항 임항도로 설계VE 용역	25	-	-	절대공기 부족	25
	기타항만 재개발	항만재개발 총사업비 산정용역 (묘도)	200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3.10~'24.6) 및 총사업비 협의 기간 소요로 공사 준공 지연	-
	부산북항 재개발	부산북항 2단계 재정지원	2,619	-	-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수립지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곤란	261
지특 회계	연안정비	경주 전동지구 연안정비	500	-	-	지역주민 민원 등에 따라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시행	-
합 계			5,279	-	-		

자료: 해양수산부

2)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실집행을 50% 미만사업:
「보조금법령」 준수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해양수산부는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따른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 및 이월 방지 등 시정이 필요함.

□ 2024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은 6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1조 1,862억 2,800만원)의 96.2%인 1조 1,853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민간보조사업(320-01, 320-07)집행내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1,186,282	44,486	1,232,305	1,185,363	96.2

자료: 해양수산부

□ 피보조기관 실집행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음에도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사업은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②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③ 광양항(3단계),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의 4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①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과 ④ 물류기업 유치지원 사업의 경우 피보조기관에 따라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계 · 기금	세부 사업명	부처 집행내역					피보조기관 실행내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피보조기관	국고 보조율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실 집행률 (D/C)
일반 회계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2,729	-	2,729	2,723	99.8	수협 중앙회	70	410	-	410	-	410	-
농특	양식 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5,601	-	5,601	2,800	50.0	수협 중앙회	100	2,800	-	2,800	854	1,946	30.5
교특	광양항 (3단계)	176,101	15,669	192,607	192,394	99.9	여수 광양 항만 공사	25.50	82,435	75,340	157,775	15,110	142,665	9.6
교특	물류기업 유치지원	12,131	-	12,131	9,891	81.5	인천 항만 공사	정액	4,400	171	4,571	3,470	1,101	75.9
							부산 항만 공사	정액	5,100	-	5,100	-	5,100	-
							소 계	-	9,500	171	9,671	3,470	6,201	35.9

자료: 해양수산부

-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금액(4억 1,000만원)은 장거리위치발신기기 업데이트 지원을 위한 것으로,⁶⁾ 2020~2023년 장거리위치발신기기 보급 지원 사업 대상인 근해어선 1,950

6)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해상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실시간 위치확인을 위하여 근해어선(19개 업종, 약 1,950척)을 대상으로 장거리위치발신기기 설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임.

척 전체를 대상으로, 단가 30만원,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⁷⁾

보조금은 그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16①, 령§7①-5.),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하나,⁸⁾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예산 전액을 피보조기관인 수협중앙회에 교부하였고, 수협중앙회는 이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로 볼 수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장거리위치발신기기 기능개선 사항 반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SW”)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어획보고 기능 등 SW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현장실증시험 기간이 소요되어 해당 예산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7) 30만원 × 1,950척 × 70% = 4억 1,000만원

8)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17①).

해양수산부는 향후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금액 56억원은 2022년 기준 전력사용 호수인 1만 2,731호를 대상으로, 호당 연간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⁹⁾

보조사업자인 수협중앙회는 예산액의 50%인 28억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5%(8억 5,400만원)를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동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2,481개 어가가 신청하여 그 중 2,103개 어가가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25.6.)되었는데, 이는 예산액 산출시 기준이 된 1만 2,731호의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 수요가 높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예산액 대부분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수요 예측을 통해 민간보조금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해수면·내수면 양식어업인 및 수산물 부화·수산종자 생산어업인 총 1만 2,731호를 대상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사업임.

□ 광양항(3단계)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금액 824억 3,500만원은 북측배후 단지 조성공사에 8억 5,100만원과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에 815억 8,4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¹⁰⁾

민간보조사업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년도 이월액 75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77억 7,500만원의 9.6%인 15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할 경우 2024년도 예산액(824억 3,500만원)의 0.5%인 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광양항(3단계) 사업의 민간보조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실집행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실 집행률 (D/A)
북측 배후단지 조성	851	851	851	3,558	4,409	4,006	453	403	53.2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81,584	81,584	81,584	71,782	153,366	11,160	-	142,206	-
합 계	82,435	82,435	82,435	75,340	157,775	15,166	453	142,609	0.5

자료: 해양수산부

광양항(3단계) 사업의 경우 최근 5년(2020-2025년)간 매년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 2023년에도 전

10)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양항(3단계) 사업은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시설 및 배후 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특정해역 암초제거 공사, 광역준설토투기장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됨.

년도 이월액의 일부만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된 데에 이어, 2024년에도 당해 연도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음.¹¹⁾

연례적인 이월은 사업 목적 달성을 지연시키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야기하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물류기업유치지원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금액은 인천항과 부산항에 각 1개소씩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중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보조금은 총 사업비 266억 2,000만원의 3년차 사업비 비율(27.6%)를 반영하여 73억 3,500만원이 산정되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이 중 51억을 교부받았으나, 공사절차 지연에 따라 예산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실집행 단계에서 전년도 이월액의 일부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해당 연도 교부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다시 이월하는 집행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매년 보조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대규모 건립사업의 경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항만 활성화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11)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3년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으로 69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전년도 이월액(32억 5,300만원)의 일부인 4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17억 8,200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24년에도 동 내역사업에 815억 8,4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전년도 이월액의 일부인 11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기 위해서는 배후단지 내 공동물류센터의 적기 건립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는 건립사업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실 집행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예산 집행은 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양정원 조성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과 집행의 효율성 저하

-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원 조성사업에서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해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간 지적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보전과 관리에 기반한 해양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상생형 발전 선도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0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¹²⁾.

【 2024년도 해양정원 조성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정원 조성	2,000	2,000	-	-	2,000	-	-	2,000	-

12)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양정원 조성(1031-307)

(나) 검토의견

-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충남 서산시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거점으로 친환경·생태관광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65% : 지방비 35%)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236억원임.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개요 】

구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위치	충남 서산시, 태안군 가로림만 일대(159.82km ²)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서산시)		
사업기간	'23 ~ '27년		
총사업비	총 1,236억원(국비 834억원, 지방비 402억원)		
예산집행	년도	예산액(백만원)	집행액
	2022	3,585(수시배정)	0
	2023	2,150(수시배정)	0
	2024	2,000(수시배정)	0
사업목적	- 해양보호구역을 거점으로 친환경·생태관광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자체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 후 같은 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3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총사업비 등 변경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단되었고,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4년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시행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2022년~2024년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2022년 35억 8,500만원, 2023년 21억 5,000만원, 2024년 20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보면, 본 사업은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율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1차 사업계획 변경).

2021년 12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2022년 수시배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이 중단되며 재차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2차 사업계획 변경).

이후 2022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를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50조¹³⁾에 따라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 최종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나(3차 사업계획 변경), 2024년 7월 타당성재조사 결과 AHP 0.49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13)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경과 】

시 기	내 용
2019. 4.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충남도)
2019. 10.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신청(해수부 → 기재부) - 총사업비: 2,715억원
2019. 12.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19.12.19.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9.	기재부 협의 거쳐 총사업비·국고보조율 등 사업계획 변경 제출 - 총사업비 2,715억원, 일괄 70% 보조 → 총사업비 2,448억원, 평균 64% 보조
2021. 12.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타 통과를 전제로 2022년도 수시배정예산 35억 8,000만원 편성
2022. 1.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단 요청 * 22.1.27. 예비타당성조사 중단
2022. 5.~	타당성 재조사 수행 * '22. 5.19. ~ , KDI - 총사업비: 1,577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타당성 재조사 관련 국가재정법 규정에 근거하여 재조사 추진
2022. 12.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타재 통과를 전제로 2023년도 수시배정예산 21억 5,000만원 편성
2023. 6.	사업계획 변경안 검토·제출(충남도 → 해수부 → KDI) - 총사업비: 1,236억원
2023. 12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타재 통과를 전제로 2024년도 수시배정예산 20억원 편성
2024. 4	KDI 경제성 분석 완료
2024. 6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실시
2024. 7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 - AHP 0.49로 사업시행 타당성 미확보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통과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전’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시설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의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불용이 반복되었음에도 2024년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이 재차 불용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계획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해양정원 조성사업(가로림만) 사업계획 변경현황 】

시 기	예비타당성조사 중 변경('20.9)	타당성재조사 추진시 변경('22.5)	최종안 ('23.6)
총사업비	2,448억원 (국비 1,555/지방비 893)	1,577억원 (국비 1,024/지방비 553)	1,236억원 (국비 834/지방비 402)
사업기간	'21 ~ '25년	'22 ~ '26년	'23 ~ '27년

* 자료 : 해양수산부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서의 사례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사업 계획 변경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해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의 반복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그동안 반복적인 사업계획 변경, 예산의 불용, 타당성 확보 실패 등을 겪어온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경북 호미반도(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와 전남 여자만(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에서도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로림만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2)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 관련 법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 부적절

- 해양수산부는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미협의로 2023년 실시
설계 예산이 불용되었음에도 2024년 착공 예산이 편성되어 재차 불용된 점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 관련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와 BTL
정부지급금 지급,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비 및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63억 8,400만원 중 1,11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1,5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8억 1,400만원을 불용
하였음.¹⁴⁾

【 2024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105,112	105,112	11,272	-	116,384	111,054	4,515	814	80,067

14)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행정기관인 선부(船府)¹⁵⁾를 재조명하여 해양영토 및 해양안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부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2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 개요 】

- 위치 : (당초)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당리 ⇒ (변경)어일리
- 총사업비 : 313억원(역사교육원 201억원^(국비), 기념공원 113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6년~'29년(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9,296,㎡, 건축연면적 2,700㎡(지상 2층)
- 사업내용 : 선부 역사교육관, 해양 메타버스관, 다목적홀 등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내역사업은 사업 대상부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부지 미해결 문제로 2023년도 편성된 예산(실시설계비 10억원)이 전액 불용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선부역사교육원 착공소요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전액 불용되었음.

15) 신라시대 문무대왕代(678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선박·항해) 전담 행정기관

【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 결산 현황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3년(실시설계비)	1,000	-	1,000
2024년(착공소요)	200	-	200

* 자료: 해양수산부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¹⁶⁾, 당초 부지에 선부역사교육원을 조성하려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필요한데, 해제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부지에 대하여 농업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량농지의 축이 절단되어 농지를 추가로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고, 그로 인해 2023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던 것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대안부지 확보 없이 2024년도에 즉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었으므로, 2024년도에는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16)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양수산부는 사업 대상부지 해제 협의가 2023년~2024년 걸쳐 진행되면서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완고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된 문제가 있음.

【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 진행상황 】

- 국립 선부해양문화교육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21.1.~8., 경주시)
-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22.3.~9., 해수부)
- '23년 예산 국회 설계비(10억원) 반영 및 건축설계 추진('23.1.~)
 - * 공공건축 사전검토('23.1.),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 및 설계 공모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조기 완료('23.5)
- 사업 대상부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23.5~'24.4., 농식품부)
 - ※ (농식품부 부동의 주요사유) 농업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량농지의 축이 절단되어 농지 추가 잠식 우려
- 사업 대상부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23.7~'24.12., 경주시)
- '23년도 예산(실시설계비 10억원) 및 '24년도 예산(착공소요 2억원) 불용 조치

* 자료: 해양수산부

- 현재 선부역사교육원 조성과 관련하여 경주시는 문무대왕면 어일리 일원을 대안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동 부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지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실시설계 및 착공 예산을 편성하여 결국 불용에 이르게 된 점은
해양수산부가 집행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했음을 의미함.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선부역사교육원 조성사업이 기존계획과
같이 국비 투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 경주시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통해 법적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센터 및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

-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된 점을 고려할 때,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관련 건립사업(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 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은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와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23억 6,300만원 중 22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⁷⁾

【 2024년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22,224	22,224	139	-	22,363	22,170	66	127	24,578

17)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2031-312)

(나) 검토의견

(1)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연례적 예산 이월

□ 내역사업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조성사업은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STEM 빌리지’를 조성하여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기술사업화 공간 등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해양융복합산업 R&D 고도화 및 해양 신산업 성장 동력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목적)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연구, 산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공간 제공
- (사업위치/규모) 부산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 / 10,385.00m²
- (총사업비/사업기간) 32,251백만원(국비7:지방비3) /2019~2025년(7년간)
- (주요기능)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지원
 - (입주공간) 해양수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입주(40개사 내외)
 - (지원시설) 협업공간, 회의실, 시제품제작실, 연구개발실 및 창고 등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조감도>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위치도>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내역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라¹⁸⁾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4년도의 경우 29억원을 교부받았고, 전년도 이월액 76억 4,000만원이 있어 총 예산현액 105억 4,000만원 중 78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26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음.
- 해양과학기술 산학협력센터 조성사업의 경우에 2023년에 76억 4,000만원, 2024년에 26억 4,200만원이 이월되는 등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지 관련한 민원 및 총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기준 2024년에 이월된 예산 전액에 대한 실집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25년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참고하면,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는 단순 창업지원 공간이 아니라, 해양클러스터 내 공공기관·대학 등과의 상시 협력을 통해 첨단 해양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고, 2023년 12월 6일에는 이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음.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상황에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그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동 센터 조성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의 예산 이월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¹⁹⁾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의 내역사업으로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①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②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③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사업이 보조사업(국비 50%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①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전남 완도군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해조류로부터 활성소재를 추출·생산하여 안정적인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및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②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경북 포항시에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해안의 해양자원과

1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해양바이오 메디컬 연구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며,

③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사업은 충남 서천군에 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품·기능성 식품 관련 원료표준화,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 인증지원을 위한 사업임.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 비교 】

구 분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위 치	전남 완도군	경북 포항시	충남 서천군
사업 기간	'21~'26	'23~'27	'23~'27
총사업비	232.3억 (국50%, 지50%)	340억 (국50%, 지50%)	250억 (국50%, 지50%)
규모	3,868m ²	5,176m ² 당초 7,216m ² → 축소	3,650m ² 당초 5,760m ² → 축소
이월액	('24년)29.95억 원	('24년)12.02억 원	('24년)17.68억 원

* 자료: 해양수산부

□ 각 사업은 모두 해양바이오 인프라의 확충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각각 지역의 해양자원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되었으며,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부터 메디컬 특화, 표준화 및 인증 등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3개의 사업은 설계 변경, 총사업비 증액 협의, 감리비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2024년도에 교부된

예산의 실행률이 각각 0.2%, 1.2%, 0%밖에 되지 않는 등 교부된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 2024년도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 예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C/A)
					이월액 예산 현액	제외 집행액 (C)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3,000	724	3,724	729	3,000	5	2,995	-	0.2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 연구센터 건립	1,217	300	1,517	315	1,217	15	1,202	-	1.2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1,768	301	2,069	301	1,768	-	1,768	-	-

* 자료: 해양수산부

□ 각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2023년 12월에 공사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감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거친 이후에 다시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다음으로, ②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사업 비가 300억원, 사업규모가 7,216㎡였으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적정 공사단가 반영 및 규모 재산출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

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의를 거치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신규등록 협의를 진행('24. 3월~10월)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마지막으로, ③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250억원, 사업규모 5,760㎡였으나, 타당성조사('22)와 건축기획용역('24) 간 공사단가 차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 공사단가 반영 및 규모 재산출을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24. 3월~10월, 총사업비 유지, 규모 축소)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해양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별 추진에 지속적인 차질이 생기는 경우 해양바이오 인프라 확충과 각 기관의 기능 및 연계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해양수산부는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건립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 : 기술용역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 운영제도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는 기술용역을 위한 평가 시 평가위원 요건의 강화, 평가항목의 배점 비율 조정 등 기술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용역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은 해상교통안전 확보, 해양주권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개발을 위해 EEZ 및 연안해역에 대한 정밀조사, 해양경계 기준관리,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 전자해도 개발, 항해 간행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41억 3,800만원 중 468억 2,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5%)되고, 65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²⁰⁾

【 2024년도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53,522	616	-	54,138	46,827	794	6,517	54,641

※ 해양수산부

2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2033-300)

(나) 검토의견

□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은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해양기본조사」, 「연안해역조사」, 「국가해양경계기준관리」, 「해양정보간행물제작」, 「전자해도개정 및 개발」 등 5개 내역사업은 모두 해양조사를 기반으로 해양주권 강화, 항해안전 확보, 해양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공공기반사업이며, 관련 해양조사는 일반연구비 비목을 통해 집행되고 있음.

【 2024년도 내역사업별 일반연구비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해양기본조사	5,879	-	-	5,879	5,060	-	819	5,378
일반연구비	4,680	-	-	4,680	3,894	-	786	4,179
연안해역조사	17,540	-	-	17,540	14,580	-	2,960	16,312
일반연구비	16,365	-	-	16,365	13,474	-	2,891	15,137
국가해양경계기준관리	11,886	275	-	12,161	10,392	366	1,403	12,200
일반연구비	9,070	275	-	9,345	7,662	366	1,317	9,265
해양정보간행물제작	7,229	90	-	7,319	6,612	110	597	7,063
일반연구비	6,010	90	-	6,100	5,501	110	489	5,844
전자해도개정및개발	10,988	251	-	11,239	10,183	318	738	13,688
일반연구비	9,495	251	-	9,746	8,732	318	696	12,195

※ 해양수산부

- 이러한 해양조사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 또는 해양조사·정보업자가 수행하는 것으로,²¹⁾
-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영역의 업무로서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립해양조사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의 위임을 받아 발주기관이 자체 발주 방식²²⁾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내역사업별로 총 127건(연평균 25.4건)의 기술용역을 실시하였음.

2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조사기술자) ① 해양조사(해양지명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① 해양조사·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해양조사·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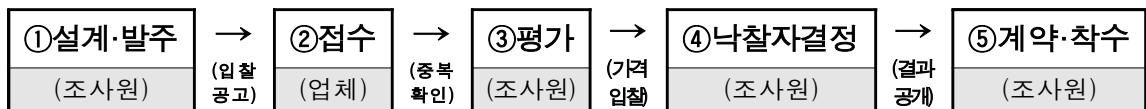
4.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최근 5년간 내역사업별 기술용역 수행 건수】

연도	국가해양 기본조사	연안 해역조사	국가해양경계 기준관리	해양정보 간행물제작	전자해도 개정 및 개발	계
2019	-	3	7	1	1	12
2020	4	5	5	3	3	20
2021	6	12	4	10	11	43
2022	2	6	6	2	2	18
2023	-	8	4	1	2	15
2024	2	7	5	3	2	19
계	14	41	31	20	21	127
평균	2.8	8.2	6.2	4	4.2	25.4

※ 해양수산부

【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 기술용역 등 계약절차 】



-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 개요 -

- 기술평가 근거 규정 :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예규)
- 기술평가위원회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규정 없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
- 평가위원 구성 : 추정가격의 고시금액 기준에 따라 3명(고시금액 미만)이상, 5명(10억 원 미만)이상, 7명(10억 원 이상)을 선정
* 평가대상 용역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그 용역 사업부서 소속 직원은 1명 이하로 선정해야 함
- 평가절차 : (평가점수) 정량평가 96점, 정성평가 4점으로 구성
(평가절차) 사업부서가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고, 이후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입찰이 진행되며, 낙찰자 결정 및 결과 공개 후 계약 체결

□ 한편, 2024년 남해지방경찰청은 해양조사업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양조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 및 용역사업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²³⁾하였는데, 이 중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공무원 징계절차를 거쳐 파면되었음.

- 뇌물수수 혐의자 일부(3명)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실시된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의 127건의 기술용역 중 총 42건의 기술용역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술용역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위 기술용역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이는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절차 및 관련 규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23) [2024년 남해지방경찰청의 해양조사업체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개요]

○ 사건개요

-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업체 고발사건 수사 중('24. 5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의 비리 혐의(금품 수수)를 포착하여 5명 송치하였으며(구속 3명, 불구속 2명), 김OO, 황OO, 임OO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무원 징계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 현재 파면되었음.
(그 밖의 장OO, 김△△는 불구속, 공무원 징계처분 중)

○ 뇌물수수 사건 관련자의 업무 직위 현황

이름	당시 담당 직위	비고
김OO	서해해양조사사무소장	'24.9.23 기준
황OO	해양관측과 관측기획팀장	"
장OO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해양조사담당	"
임OO	수로측량과장	"
김△△	국가해양위성센터장	"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뇌물수수 관련자의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현황 : 총 42건 】

연도	국가해양기본조사			연안해역조사			국가해양경계 기준관리			해양정보 간행물제작			전자해도 개정 및 개발		
	김 ○○ ○	황 ○○ ○	장 ○○ ○	김 ○○ ○	황 ○○ ○	장 ○○ ○	김 ○○ ○	황 ○○ ○	장 ○○ ○	김 ○○ ○	황 ○○ ○	장 ○○ ○	김 ○○ ○	황 ○○ ○	장 ○○ ○
2019	-	-	-	2	-	-	2	4	-	1	-	-	-	-	-
2020	1	1	1	1	2	-	3	-	-	3	-	-	2	-	-
2021	-	1	-	1	1	3	1	-	-	2	-	1	1	-	1
2022	1	1	-	-	1	-	1	1	-	-	-	-	-	-	-
2023	-	-	-	1	1	-	-	-	-	-	-	-	-	-	-
2024	-	-	-	-	-	-	-	-	-	-	-	-	-	-	-
총계	2	3	1	5	5	3	7	5	-	6	-	1	3	-	1

※ 비리혐의자 5인 중 임○○, 김△△은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

※ 해양수산부

□ 첫째, 평가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찰대상자가 평가위원장 또는 위원 구성을 예측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외의 외부 위원의 구성비율 및 선임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평가위원 선정 기준의 공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조사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인력풀은 2024년 9월 기준 84명이며, 운영 중인 평가위원 중 위원장 직급은 22명으로, 사업 담당을 제외하면 21명 중에서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있어 일부 인원이 기술평가에 빈번하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비율이 정량평가(96점)와 정성평가(4점)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의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 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량(98점), 정성(2점))보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의견에 따른 업체 선정의 개입 여지가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클 여지가 있어 보임.

【 기술평가 위원 및 평가방식 비교(조달청) 】

구 분	국립해양조사원(국가기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위원 구성 수	3~7명 (고시금액 미만 3명, 10억미만 5명, 10억이상 7명)	7~9명 (30억 미만 7명, 30억 이상 9명) ※ 2/3 출석 충족 시 평가진행
평가위원 요건	조사원 내부직원 중 7년이상 근무자	공무원 6급 승진 후 5년이상 근무자, 기술사 3년이상 경력, 기사 10년 이상 경력, 박사 3년이상, 조교수 이상 등 관련업무 전문가
평가위원 지정 방식	위원차려선정(인사담당자)→ 평가 가능여부 확인 및 위원 선정(사업부서) ※ 사업부서 1명 이하	무작위 추첨 ※ 수요기관 1명 이하
평가배점 (정성)	고시금액 미만 0점	5억 미만 0점
	4점 (기술능력2점/업무관리2점)	2점 (기술능력1점/업무관리1점)
기타	「해양조사정보법」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사업의 기술용역 적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조달청에서 선정 집행하는 기술용역에 적용

□ 이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은 기술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비율을 기존 정량(96점) + 정성(4점) 평가 방식에서 정량 100점 체계로 전환하여 평가위원의 주관적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평가위원 구성도 고시금액 기준에 따라 10억 미만은 2인 이상, 10억 이상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기존 내부 위원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혼합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평가위원 풀도 기존 84명에서 약 69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는 설명임.

□ 다만, 개선방안에 따라 정량 100점 체계로 전환할 경우 입찰대상자의 사업수행태도 등 평가위원의 가치판단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조달청 기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량(98점), 정성(2점))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총 인원수를 확대하되, 외부인원의 수를 과반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개선방안은 근거 규정인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 없이 내부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으로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조달청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위원 요건의 강화, 위원 구성의 다양화, 평가항목의 배점 비율 조정 등 기술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용역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
(R&D): 다부처사업 추진 시 부처 간 사전 조정 및 협의 필요

- 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은 방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간 다부처사업인데 방위사업청 “예산 미확보”로 인해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는 바, 향후에는 다부처사업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편성 시 주관부처의 예산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정과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은 민(民)과 군(軍)이 활용 가능한 고출력 병렬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 및 고신뢰도 CBM+ 기술 개발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현액 10억 8,0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²⁴⁾.

【 2024년도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1,080	-	-	1,080	-	-	1,080	-

24) 회계(기금)-세부사업 :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2046-347)

(나) 검토의견

□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

사업은 친환경 예인선용 고출력 병렬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운용유지비 절감을 위한 해상용 CBM+ 예지정비 시스템 및 고안전성(화재위험 최소화) 2차전지(LTO배터리팩) 국산 개발 및 해상 실증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을 주관부처로 하여 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다부처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출연을 위해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방위사업청 “예산 미확보”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음.

【(다부처)CBM+ 기반기술 적용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개발(R&D)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방사청(주관), 해수부, 과기부가 협력하여 민·군이 활용가능한 고출력 국산 병렬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및 고신뢰도 CBM+* 기술 개발을 추진함

*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 상태기반 예지정비

- 5년('24년~'29년) 간 총 437.2억원*을 투입하여 다부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방사청에서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민간 예인선에 적용하고 고안전성 2차전지 배터리 개발 등을 담당

* 방사청 205.8억원, 해수부 132억원, 과기정통부 99.4억원

- (고출력 병렬 하이브리드) 기존 동력공급장치(엔진)를 활용해 민과 군이 사용가능한 친환경/고출력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방사청, 해수부)
- (CBM+ 예지정비) 핵심부품에 대한 예지정비 기술 개발(과기부)
- (배터리팩) 고안전성(리튬티탄산화물) 배터리팩 개발(방사청, 해수부)

* 자료: 해양수산부

- 방위사업청은 내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당해 연도인 2024년 4월 실무위원회에서 동 사업이 2026년 착수하는 핵심기술 과제로 결정²⁵⁾되어 2024년 추진이 불가하게 되면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협조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이 해당 연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²⁶⁾ 이를 전액 불용 처리하였다는 것은 다부처 협업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정이 부족하였던 점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임.

□ 국가 예산으로 다부처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특정 부처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한 부처의 예산이 불용될 경우, 당초 목표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 다부처사업 등 협업사업 추진 시 해양수산부는 주관 부처의 예산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확인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5) '24년도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 방사청 '24년도 착수 예정 과제 48건 중 7건만 '24년에 착수하고 잔여 과제는 '25~'27년 착수로 조정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도 예산 6.16억원 확보

6)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해양수산부는 설계 보완 및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된 서귀포·군산 사업지에 대한 건축 및 향후 신규 사업지로 추진될
완도·진해 사업지에 대한 설계가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제협약(MARPOL)²⁷⁾에 따
라 1996년부터 1997년 동안 무역항 내 의무설치되어 운영 중인 선박
폐유수용시설의 현대화(리모델링)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54억 4,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²⁸⁾.

【 2024년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5,445	5,445	-	-	5,445	5,445	-	-	4,901

27) MARPOL(Marine Pollution treaty)은 1973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정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다. 「MARPOL 부속서 I」(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에 따르면 각 당사국 정부는 항만에 유성잔류물 및 유성혼합물을 수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8)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나) 검토의견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액상슬러지 등 해양오염물질을 수거·정화하는 폐유수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 1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능력 저하, 악취 및 작업자 안전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공단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설계 및 공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

구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배경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무역항 내 의무 설치·운영('96~) 중인 선박폐유 수용시설**의 현대화 추진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 부속서 I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선박, 해양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선저폐수, 액상슬러지, 폐윤활유, 기름걸레 등)의 수거													
사업목적	노후화된 폐유수용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거물질 저장용량 및 선저폐수 처리성능 향상, 악취 저감, 근로자 안전 확보 추진													
사업기간	2021년~2027년													
사업대상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96~'97)하고 해양환경공단에 운영 위탁 중인 13개 사업소													
	구분	광양	마산	목포	평택	통영	군산	서귀포	사천	옥계	완도	진해	속초	제주
	형태	신축					리모델링					-	-	
	기간 (계획)	'21~'22년			'22~23년		'23~24년		'24~26년		'25~27년		-	-
	* 보류대상 : 속초(민원에 따른 선저폐수처리 및 해양방류 가동 중단), 제주(지자체 부지계획 수립에 따른 보류)													
총사업비	46,380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27년(안)	합계
	사업비 (백만원)	900	18,000	11,918	5,445	4,901	2,616	2,600	46,380
대상	설계	목포·마산·광양	평택·통영	군산·서귀포	옥계·사천	완도·진해	완도·진해	-	11개소
	공사	-	목포·마산·광양	평택·통영	군산·서귀포	옥계·사천	옥계·사천 완도·진해	완도·진해	11개소
국비 보조율	100%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대상 시설 대부분은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설치되어 30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법정 처리용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차수별로 2년간(설계 1년, 공사 1년) 순차적인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²⁹⁾에 따라 폐유수용시설이 설치된 광양, 마산, 군산 등 5개 국가관리 무역항과 진해, 속초, 서귀포 등 8개 지방관리 무역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도의 경우에는 옥계·사천의 실시설계 및 서귀포·군산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2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상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에 처음으로 목포·마산·광양 등 3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기존 3개소(목포·마산·광양)의 건설공사와 평택·통영 신규 2개소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처음 계획한 것에 대비하여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대상지의 설계·건축 또한 지연되었음.

- 2024년도의 경우 서귀포·군산 대상지는 건축이 완료되었어야 했으나 설계 보완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건축이 완료되지 못했고, 이월액 22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음.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지	구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사유
2021	목포·마산·광양	설계	900	615	285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소계	900	615	285	
2022	목포·마산·광양	설계	285	285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목포·마산·광양	건축	17,400	512	16,888	
	평택·통영	설계	600	471	12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지연
		소계	18,285	1,268	17,017	
2023	목포·마산·광양	건축	16,888	16,888	-	
	평택·통영	설계	129	128	-	
	평택·통영	건축	11,600	4,531	7,06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지연
	서귀포·군산	설계	318	236	82	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
		소계	28,935	21,783	7,151	

2024	평택·통영	건축	7,069	6,826	-	집행잔액 반납
	서귀포·군산	설계	82	3	-	집행잔액 반납
	옥계·사천	설계	315	271	-	집행잔액 반납
	서귀포·군산	건축	5,129	2,898	2,230	설계 보완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2,595	9,998	2,230	
2025	서귀포·군산	건축	2,230			
	옥계·사천	건축	4,682			
	완도·진해	설계	219			
	소계		7,131			

주: 사업시행주체(해양환경공단)의 이월액·불용액임
 자료: 해양환경공단

□ 사업의 지연은 주로 인·허가 발생 때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는 항만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인·허가 발생으로 목포·마산·광양 등에서 지연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협의 때문에 서귀포에서 지연이 발생하였음.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인·허가 지연 현황 】

인·허가 구분		관련법	지연 해당 여부
1단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법	
	공용건축물 협의 (건축 허가·신고)	건축법	군산, 서귀포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지자체 경관 조례	마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산
	철도보호지구 건축행위 허가	철도안전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협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귀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항만법	목포, 마산, 광양 통영

2단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항만법	
3단계	사용승인	건축법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항만법	

자료: 해양환경공단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을 보면, 동일한 문제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해당 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인·허가 절차 지연이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 많았는데 「항만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소관하는 부처가 해양수산부라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 등을 미리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등의 사전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착수하는 사업부터는 사업기간을 당초 2년(설계 1년, 공사 1년)에서 3년(설계 1.5년, 공사 1.5년)으로 조정한 만큼 향후 사업지부터는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목표한 2027년까지는 모든 사업지가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7)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 : 보조금관리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필요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재산의 관리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이 비목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보조금시스템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 사업」은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제작 및 여객선 선장 적성 심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미취업 청년해기인력 대상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억 8,200만원 중 16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³⁰⁾

3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6131-305)

【 2024년도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강화	1,320	0.3	362	1,682.3	1,671.6	-	10.7	2,001

※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기관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를 통해 ①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②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③ 「선원인권보호 교육」 등 3개 내역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해당 내역사업들은 2024년 교부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3개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해양수산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예산 (추경포함)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360	360	360	-	360	360	-	-	100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190	190	190	-	190	190	-	-	100
선원인권보호 교육	300	300	300	-	300	300	-	-	100

※ 해양수산부

- 먼저,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내역사업」은 미취업 청년해기인력을 대상으로, 선사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화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으로 인건비 6,000만원과 사업비 3억원, 총 3억 6,0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음.
- 다음으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내역사업」은 선박관리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으로 인건비 7,200만원과 사업비 1억 1,8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음.
- 마지막으로 「선박인권보호교육 내역사업」은 선내 인권보호 및 갈등 해소를 통해 안전운항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선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으로 인건비 4,000만원과 경상사업비 2억 6,000만원, 총 3억원이 편성·집행되었음.

□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³¹⁾에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보조사업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3개 내역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비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중요재산 취득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첫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³²⁾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3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내역사업」을 수행한 한국선박관리
산업협회는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3,203만원
과 숙박업체 이용료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내역사업」 보조금 비목 부적절 집행 현황】

구분	예산항목	집행이체일자	집행내역	지출액(원)
운영비	일반수용비(210-01)	24년 8월9월 (2회)	교육생 식비 집행	32,036,435
운영비	일반수용비(210-01)	24년 5월9월 (2회)	교육 숙박업체 계약	70,000,000

* 자료 : 해양수산부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인쇄비, 회의수당, 수수료,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소규모용역비 등의 용도로 집행되는 비목으
로, 교육생들의 식비 및 숙박업체 이용료 전체를 일반수용비로 집
행한 것은 지침에서 정하는 보조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에 부합하
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임.

【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운영비(210목) 】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등
		9. 공고료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둘째,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내역사업」을 수행한 한국선박관리
산업협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협회의 사업책임자에 대
한 보수를 인건비비목(110-01)으로 매년 6,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
으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정하고 있는
보조비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였음.

【 최근 3년간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내역사업」 사업비에서 보조인건비 집행 현황 】

구분	예산항목	집행시기(횟수)	집행내역	지출액(원)
2022년	인건비(110-01)	1월~12월(12회)	사업책임자 1인 인건비	60,000,000
	일반수용비(210-01)	3월~7월(5회) 9월~11월(3회)	보조인력 1인 인건비	7,375,920
2023년	인건비(110-01)	1월~12월(12회)	사업책임자 1인 인건비	60,000,000
	일반수용비(210-01)	3월~5월, 7월(4회) 9월~11월(3회)	보조인력 1인 인건비	7,150,820
2024년	인건비(110-01)	1월~12월(12회)	사업책임자 1인 인건비	60,000,000
	일반수용비(210-01)	3월~6월(4회) 9월~11월(3회)	보조인력 1인 인건비	5,041,100

* 자료 :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에 따르면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는 인건비비목 중 보수(110-01)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일용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인건비비목 중 일용임금(110-04)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은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³³⁾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³⁴⁾는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한 후 15일

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3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사 등으로 하여금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 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인권보호교육 내역사업」을 수행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취득한 노트북, TV 모니터, 빔 프로젝터 등 중요재산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으로의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중앙관서의 장인 해양수산부는 중요재산의 보조금시스템 공시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지침³⁵⁾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최근 5년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목록 】

연 번	훈 련장비	취득목적	취득연도	수 량	취 득가액	중앙관서의 장 보고여부	보조금시스템 공시여부
1	노트북	교육용	2024	1	1,085,260원	×	×
2	TV 모니터	교육용	2024	1	719,000원	×	×
3	빔 프로젝터	교육용	2024	1	1,019,900원	×	×

* 자료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수행 시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중요재산의 관리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할 수 있다.

35) 해당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중요재산가액의 변동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임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3개 내역사업별 관리 미흡 내역 】

내역사업명	관리 미흡 사항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숙박업체 이용료 납부 ○ 일반수용비로 상해보험비 납부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 2022년부터 2024년 총 3년간 일반수용비로 보조인력 인건비(매년 약 7개월간) 지급 ○ 일반수용비로 교육생들의 식비와 식비수수료 납부
선원인권 보호교육	○ 일반수용비로 노트북 구입 ○ 중요자산인 노트북 등 중요재산 공시 누락

* 자료 : 해양수산부

□ 또한,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이 비목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보조금시스템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³⁶⁾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하 생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 기본경비(비총액): 연례적인 예산변경을 통한 집행 시정 필요

- 해양수산부는 국내 교육훈련 파견근무자들의 국외 현장학습비를 매년 과소 계상하고 부족분을 세목조정을 통해 충당해옴에 따라 2024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650%에 달하였는데, 실제 소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변경을 통한 집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해양수산부 본부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 기본경비로,³⁷⁾ 2024년 예산현액 19억 3,200만원 중 18억 1,800만원을 집행(94.1%)하고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기본경비(비총액)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본경비 (비총액)	1,933	1,933	122	△123	1,932	1,818	76	38	2,005

자료: 해양수산부

37)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비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7111-250)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등 총 5개의 국내 교육훈련 파견 직위를 운영하고 있음.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의 국외교육여비는 국내 교육훈련 파견근무자들의 국외 현장학습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³⁸⁾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국외교육여비 예산현액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4년도 기본경비(비총액) 국외교육여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비 목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외교육여비 (220-03)	2	-	31	33	33	-	-	2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 국외교육여비의 최근년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불용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2021년부터는 매년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반영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집행액은 해마다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8) 국외교육여비(220-03)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4.1.)」에 따라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인 국외업무여비(220-02)와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 최근년도 국외교육여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9년	18	-	0
2020년	13	-	0
2021년	2	-	0
2022년	2	17	850
2023년	2	30	1,500
2024년	2	33	1,650

자료: 해양수산부

- 예산액 대비 국외교육여비의 집행률은 2022년 850%에서 2023년 1,500%, 2024년 1,650%까지 증가하였는데, 해양수산부는 같은 세부사업 내 동일 목(220, 여비)인 국외업무여비(220-02) 예산을 세목조정(220-02 → 220-03)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였음.

【 국외교육여비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비목		세부사업 명	비목
2024 년	‘24.3.12.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국외업무 여비 (220-02)	6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국외교육 여비 (220-03)
	‘24.8.13.			18		
	‘24.8.19.			0.1		
	‘24.9.10.			7.5		
2023 년	‘23.5.25.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국외업무 여비 (220-02)	10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국외교육 여비 (220-03)
	‘23.8.10.			3		
	‘23.9.1.			13		
	‘23.10.18.			3		
2022 년	‘22.2.22.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국외업무 여비 (220-02)	16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국외교육 여비 (220-03)

자료: 해양수산부

□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현장학습이 원활하지 못했으므로 국외교육여비 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2022년 이후 해당 비목의 집행 소요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산 변경을 통해 충당해 온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행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동 사업 국외교육여비를 실제 필요에 맞는 적정 규모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변경을 통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재산수입 29억 400만원, 경상이전수입 283억 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억 3,100만원 등 318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등으로 349억 1,400만원이 증가한 667억 3,4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667억 3,400만원 중 재산수입으로 42억 9,6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457억 3,500만원, 관유물매각대로 1억원 등 총 504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162억 9,8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2,904	4,745	4,296	-	449	1,392
토지대여료	-	1	1	-	-	1
기타관유물대여료	7	-	-	-	-	△7
기타재산이자수입	2,028	4,744	4,295	-	449	2,267
기타재산이자외수입	869	-	-	-	-	△869
경상이전수입	28,308	61,584	45,735	-	15,848	17,427
과태료	75	114	91	-	23	16
징계부과금	-	217	-	-	217	-
과징금	-	6	6	-	-	6
변상금	-	117	-	-	117	-
위약금	72	799	97	-	702	25
가산금	-	51	1	-	50	1
기타경상이전수입	28,161	60,280	45,541	-	14,739	17,38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31	404	404	-	-	△27
면허료및수수료	251	388	388	-	-	137
실습수입	21	-	-	-	-	△21
기타잡수입	159	16	16	-	-	△143
관유물매각대	177	1	1	-	-	△17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57	-	-	-	-	△157
토지매각대	20	-	-	-	-	△20
재고자산매각대	-	-	-	-	-	-
기계기구매각대	-	1	1	-	-	1
합 계	31,820	66,734	50,436	-	16,298	18,616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1조 6,799억 3,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71억 4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170억 4,1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808억 2,5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637억 9,6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3,812억 8,5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3,532억 3,800만원,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4,656억 9,700만원, 원양협력 533억 7,1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 자원 관리 및 조성 121억 1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1억 2,100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332억 8,7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43억 5,8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함.

【 202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81,077	754	-	-	-	81,831	80,825	322	684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66,293	3,551	-		187 △187	269,844	263,796	2,121	3,927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70,181	27,563	-		530 △530	397,744	381,285	12,101	4,358
어촌어항활성화	357,251	3,075	-	-	-	360,326	353,238	6,191	897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549,029	28	-		100 △100	549,057	465,697	50,073	33,287
원양협력	56,106	2,134	-		41 △41	58,240	53,371	2,937	1,932
합 계	1,679,937	37,104	-		858 △858	1,717,041	1,598,213	73,744	45,084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보조금법령」 취지에 부합한 집행 필요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사전계획의 구체성·현실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 취지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³⁹⁾

2024년 예산현액 142억 4,500만원 중 11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3,756	13,756	489	-	14,245	11,175	1,677	1,393	6,006

자료: 해양수산부

39)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040-317)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노후된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시설(경매장) 건축 및 부수시설(냉동·냉장, 제빙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215개 노후 위판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가 60억원인 경우 사업비의 50%(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30억원 또는 20억원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60%(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를 보조하는 방식임.

2025년 기준으로 전국 215개 위판장 중 5개소의 현대화가 완료되었고, 13개 위판장에서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음.

【 2025년 기준 위판장 현대화 추진 현황 】

사업명	개소당 사업규모	선정지역
청정위판장 건립('19~'21)	60억원	○ 고흥(完), 여수(完)
저온 경매장 지원('20~'21)	30억원	○ 영광(完), 서천(完), 목포(完), 당진(포기)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2~'23)	60억원, 30억원	○ (60억원) 목포 ○ (30억원) 장흥
저온·친환경 위판장('23~)	60억원, 30억원, 20억원	○ (60억원) 태안, 군산, 서천(선어, 활어 2개소) ○ (30억원) 보령, 강진, 제주, 고성(강원) ○ (20억원) 하동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24~)	184억원	○ 통영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25~)	184억원	○ 제주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입고부터 포장까지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의 전 과정에서 저온유통(실내온도 10도 이하 유지)을 실현하고, 선도 관리와 유통 규격화를 통하여 변질·파손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주요 설비를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전환하여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저온·친환경 위판장의 구성 요소 】

- ① (저온유통) 입고·선별·경매·포장까지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전 과정에서 위판장 실내온도 10℃ 이하 유지 * 10℃: 신선 냉장식품 보존·유통 기준(식품공전)
- ② (폐기물 발생 최소화) 선도 관리와 유통 규격화를 통하여 유통과정에서 변질·파손되어 발생하는 수산물 폐기물을 최소화
- ③ (에너지 이용 효율화)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 시설, 조명 장치 등 위판장 주요 설비를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동선 설계로 에너지 저감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편성된 예산액 6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이월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현액 119억 4,000만원 중 95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16억 1,700만원을 실집행(16.2%)하였으며 2025년도 6월까지 예산현액 51억 3,000만원 중 38억 4,000만원을 교부, 19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교부현액(122억 1,3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이 16.2%로 나타나는 등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2023~2025년) 위판장 현대화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포함)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023	600	480	480	-	480	-	480	-	-
2024	11,940	9,510	9,510	480	9,990	1,617	8,373	-	16.2
2025.6.	5,130	3,840	3,840	8,373	12,213	1,980	-	-	16.2

* 자료: 해양수산부

□ 사업지별 진행 현황을 보면, 충남 태안의 경우 지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에 따른 지연 및 민원에 따라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면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당초 2023년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실시설계가 2024년 9월부터 개시되면서 이후 공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음.

충남 보령의 경우 지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 및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전북 군산의 경우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 지연 및 사업추진 중 냉동창고 확장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되면서 착공이 계획대비 1년간 지연됨.

전남 강진 역시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 지연, 실시설계 1회 유찰 및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사업이 착공이 6개월 가량 지연되었고, 충남 서천(활어위판장, 선어위판장)

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고시가 지연되거나 지자체 매칭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계획 대비 6~8개월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별 위판장 현대화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

지역	구 분	최초 계획	추진 현황	지연 사유
충남 태안	○ 사업자 선정	‘23. 4.	‘23. 4.	
	○ 지방재정투자심사	-	‘23. 9	지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에 따른 기간소요
	○ 기본계획 수립	-	‘23.9 ~ ‘24.1.	
	○ 사업부지 변경	-	‘24.1. ~ 8.	민원발생에 의한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절차 기간 소요
	○ 실시설계	‘23.5. ~ 8.	‘24.9. ~ 12.	
	○ 어항개발사업 승인	‘23. 9.	‘25.1 ~ 2.	
	○ 공사 착공	‘23. 10.	‘25. 4.	
	○ 완공	24. 9.	‘25. 12.	
충남 보령	○ 사업자 선정	‘23. 4.	‘23. 4.	
	○ 지방재정투자심사	-	‘23.9	지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에 따른 기간소요
	○ 지자체 예산 편성	-	‘23.12 ~ ‘24.4.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 실시설계	‘23.5. ~ 8.	‘24.5. ~ 12.	
	○ 계약심사·건축허가	-	‘25.1. ~ 3.	
	○ 공사 착공	‘23. 10.	‘25. 8.	
	○ 완공	24. 9.	‘25. 12.	
전북 군산	○ 사업자 선정	‘23. 11.	‘23. 11..	
	○ 지방재정투자심사	-	‘23. 11. ~ 12.	
	○ 지자체 예산 편성	-	‘24.1. ~ 4.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 실시 설계	‘24.1. ~ 4.	‘24.5. ~ 11.	설계변경추진 (냉동창고 확장)
	○ 인·허가 절차	-	‘25.2. ~ 4.	비관리청 항만공사 승인 절차 추진
	○ 공사 착공	‘24. 5.	‘25. 5.	
	○ 완공	‘24. 12.	‘25. 12.	
전남	○ 사업자 선정	‘23. 4.	‘23. 4.	

지역	구 분	최초 계획	추진 현황	지연 사유
강진	○ 지방재정투자심사	-	'23. 9. ~ 11.	
	○ 지자체 예산 편성	-	'24.1. ~ 4.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 실시 설계	'24.1. ~ 4.	'24.5. ~ '25.2.	실시설계 1회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
	○ 인·허가 절차	-	'25.2 ~ '25.4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건축허가 절차에 따른 지연
	○ 공사 착공	'24. 12.	'25. 5.	
	○ 완공	'25. 10.	'25. 12.	
충남 서천 (활어)	○ 해양수산부 공모선정	'24. 5.	'24. 5.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4. 10.	
	○ 기본 및 실시설계	'24. 7.~12.	'24.11 ~ '25. 6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고시 지연
	○ 부지정리 및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25. 1.~2.	'25. 7. ~ 9.	
	○ 공사 착공	'25. 3.	'25. 11	
	○ 완공	'25. 12.	'26. 11.	
충남 서천 (선어)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4. 10.	
	○ 해양수산부 공모선정	'24. 11.	'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24. 12.	'25.7.~'26.2.	'25년 추경편성 추진중
	○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25.5.~8.	'26.2 ~ '26.3	
	○ 공사 착공	'25. 10.	'26. 4.	
	○ 완공	'26. 6.	'26. 12.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지방비 미편성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민원대응 및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양수산부는 전체 편성 보조금 중 79.7%을 교부하였고, 이 중 대부분이 이월되어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지별로 보면 해양수산부는 충남 태안(실집행률 5.0%), 충남 보령(0%), 전북 군산(2.5%), 충남 서천(활어)(0%), 제주(0%), 강원 고

성(0%)의 2024년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지에 배정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고,

사업진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월에도 7곳의 사업지에 대하여 2차 보조금을 교부하여 대부분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지별 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지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충남 태안	2023	150	150	150	-	150	-	150	-	0
	2024	2,850	2,850	2,850	3,000	3,000	150	2,850	-	5.0
	2025.6.	-	-	-	2,850	2,850	1,705	-	-	59.8
충남 보령	2023	90	90	90	-	90	-	90	-	0
	2024	1,710	1,710	1,710	90	1,800	90	1,710	-	0
	2025.6.	-	-	1,710	-	1,710	-	-	-	0
전남 강진	2023	90	90	90	-	90	-	90	-	0
	2024	1710	1710	1,710	90	1,810	1,259	541	-	69.9
	2025.6.	-	-	-	541	541	-	-	-	0
전북 군산	2023	150	150	150	-	150	-	150	-	0
	2024	2,850	2,850	2,850	150	3,000	76	2,924	-	2.5
	2025.6.	-	-	-	2,924	2,924	225	-	-	7.7
충남 서천 (활어)	2024	150	150	150	-	150	-	150	-	0
	2025.6.	1,425	990	990	150	1,140	-	-	-	0
충남 서천 (선어)	2024	150	-	-	-	-	-	-	-	0
	2025.6.	1,425	-	-	-	-	-	-	-	0
제주	2024	90	90	90	-	90	-	90	-	0
	2025.6.	855	855	855	-	945	-	-	-	0
강원	2024	90	90	90	-	90	-	90	-	0

사업지	연도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고성	2025.6.	855	855	855	90	945	-	-	-	0
경남 하동	2024	1,200	60	60	-	60	42	18	-	70.0
	2025.6.	-	1,140	1,140	18	1,158	50	-	-	4.3

자료: 해양수산부

【 사업지별 보조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지역	편성액	교부액 (A+B)	1차 보조금(A)		2차 보조금(B)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충남보령	1,710	1,710	'24.5.9	1,368	'24.12.26	342
충남태안	2,850	2,850	'24.5.9	2,280	'24.12.26	570
전남강진	1,710	1,710	'24.5.9	1,368	'24.12.26	342
전북군산	2,850	2,850	'24.5.9	2,280	'24.12.26	570
충남서천(활어)	150	150	'24.7.8	105	'24.8.26.	45
충남서천(선어)	150	-	-	-	-	-
제주제주	90	90	'24.7.8	63	'24.12.26.	27
강원고성	90	90	'24.7.8	63	'24.12.30.	27
경남하동	1,200	60	'24.7.8	42	'24.12.19.	18

자료: 해양수산부

-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0) 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를하여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식장임대 : 임차인의 수요를 고려한 양식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 양식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귀어·귀촌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임차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양식장임대」 사업은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위하여 양식장을 확보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임대하는 ‘임대형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⁴¹⁾

2024년 예산현액 3억 9,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양식장임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양식장임대	397	397	-	-	397	397	-	-	5,832

자료: 해양수산부

4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양식장임대(3347-367)

(나) 검토의견

□ 최근 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촌에 신규인력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런데 현재 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양식업권(면허) 및 양식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면허 및 시설 등을 단시일 내에 갖추기 어려운 신규인력에게 해당 요건은 어촌 정착을 저해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어촌사회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양식업자로부터 면허 및 양식장을 확보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임대⁴²⁾하는 본 세부사업을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수행하고 있음.

4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양식업권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공기관의 장이 양식업권을 임차한 후,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것은 허용됨.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의 구조를 보면, 기존 양식업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어촌어항
공단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적절한 양식시설
을 임대한 후 이를 귀어인 등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다시 임대(전대
차)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공단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
대료 등을 보조(민간경상보조)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공단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임차인 교육비는 전액
국비보조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 비용은 50%를 국비보
조(국비 50% : 임차인 자부담 50%)함.

【 2024년 양식장임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어촌사회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보조사 업자)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임대 제공		
지원내용:	임대 비용(국비 최대 2,500만원) 지원 및 교육 등 정착 관리 397백만원*(임대형 양식장 10개소 운영)		
'24년 예산:	* 세부내역 : (임대료 50백만원 × 10개소 × 50%) + 관리·교육비 14.7백만원 × 10 개소 × 100%)		
사업주체:	한국어촌어항공단		
기간/조건:	'24년~ 현재 / 민간경상보조(국비 50~100%)		
사업절차:	①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 임대운영 위원회 검토 및 선정 ▶ ② 사업대상자 모집 / 임대운영위원회 심사 및 선정 ▶ ③ 임대차계약 체결 ▶ ④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2024년 실적을 보면, 2024년 10개소의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목표로 하여 61개소의 기존 양식업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 중 사업성과 임대인 자격을 검정하여 19개소를 사업참여 적격 양식장으로 선정·확보하였으며, 총 16명의 임차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10명과 연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5년에는 2024년에 확보된 양식장 중 임대를 희망하는 14개소 및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모집된 13개소를 합친 27개소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쳐 25개 양식장을 선정·확보하였으며, 6월까지 3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

【 2024년 임대 양식장 현황('24.12.31.기준) 】

구분		양식장 현황					임대사항
		신청자	양식업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면적	임대면적
충남 (7)	홍성 군	남당어촌계	어류등양식업	가두리	송어	1.9ha	1.9ha
	태안 군	만대어촌계	패류양식어업	수하식	굴	5ha	5ha
		오인 영어조합법인	어류등양식업	축제식	새우	188.6ha	10.57ha
	서산 시	중왕어촌계	패류양식업	살포식	바지락	28ha	28ha
		중왕어촌계	패류양식업	살포식	바지락	50ha	30ha
		중왕어촌계	패류양식업	수하식	굴	5ha	2ha
		중왕어촌계	패류양식업	수하식	굴	5ha	2ha

구분		양식장 현황					임대사항
		신청자	양식업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면적	임대면적
전남 (11)	신안 군	반월어촌계	복합양식	수하식	전복	20ha	620m ² /128칸
		반월어촌계	복합양식	수하식	전복	20ha	2352m ² /486칸
		반월어촌계	복합양식	수하식	전복	10ha	310m ² /64칸
		죽련어촌계	해조류양식업	건홍식	김등	10ha	10ha
		죽련어촌계	해조류양식업	연승식	다시마등	15ha	15ha
		죽련어촌계	패류양식업	가두리식	전복	5ha	5ha
	무안 군	문** (나눔수산)	어류등양식업	축제식	새우	3.330ha	3.330ha
	고흥 군	도야어촌계	패류양식업	살포식	새 고막	10ha	10ha
		도야어촌계	패류양식업	살포식	새 고막	10ha	10ha
		예회어촌계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새 고막	20ha	10ha
		예회어촌계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새 고막	15ha	10ha
제주 (1)	제주 시	박** (동주수산)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	넙치	2,350m ²	2,350m ²

주 1) 4차레* 공모를 통해 총 61개소 양식장 신청하였으나 검증을 통해 최종 19개 양식장 선정

* (1차) 1.29. ~ 2.19. / (2차) 5.9. ~ 5.22. / (3차) 8.1. ~ 8.21. / (4차) 10.21. ~ 11.4.

2) 최종 계약 체결된 양식장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수량(10개소)에 대한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의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2024년의 경우 사업참여를 희망한 양식장(임대인)이 61개소에 달하였음에도 평가 결과, 이 중 42개소를 사업대상 양식장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2025년에는 4월까지 모집된 양식장(임대인)이 13개소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충분한 수의 양식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이 위치한 해역의 재해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운영가능성, 수익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양식장이 배제되었고, 현재 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국비 50% : 자부담 50%)의 지원금으로는 양질의 양식장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2024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총 16명의 임차 희망자 중 최종적으로 6명에 대해서는 상호간 조건 불일치 등으로 계약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예산 부족 외에도 임차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양식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던 점, 임차 희망자가 바라는 양식방법·양식지역·품종과 제공되는 양식장 매물이 서로 부합하지 않았던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24~2025년 임대차 계약체결 현황 】

◆ 2024년도

양식장 현황(임대)				⇒	사업대상자(임차) 현황			⇒	체결	
구분	대표자명	품종	면적		성명	생년	주소		계약기간(계약금액)	
서산	중앙 어촌계	바지락	28ha	⇒	김**	1978년	충남서산	⇒	'24.6.27. ~ '25.6.26. (55백만원)	
		굴	5ha		황**	1973년	서울성동		'24.8.30. ~ '25.8.29. (55백만원)	
제주	동주 수산	강도다리	472.5m ²		박**	1969년	전남화순		'24.8.22. ~ '25.8.21. (55백만원)	

		터봇	436.6m²	박**	1981년	제주시	'24.9.24. ~'25.9.23. (55백만원)
		터봇	658.8m²	신**	1988년	서귀포시	'24.10.17. ~'25.10.16. (55백만원)
태안	오인영어 조합법인	송어새우	9.09ha	박**	1971년	경남통영	'24.10.29. ~'25.10.28. (55백만원)
		송어	8.76ha	윤**	1988년	충남홍성	'24.11.21. ~'25.11.20. (55백만원)
		송어	8.59ha	신**	1992년	충남태안	'24.11.27. ~'25.11.26. (55백만원)
		새우	9.91ha	김**	1968년	충남서산	
무안	문용섭	새우	3.33ha	이**	1967년	전남해남	

◆ 2025년도

양식장 현황(임대)					사업대상자(임차) 현황				체결
구분	대표자명	품종	면적	⇒	성명	생년	주소	⇒	계약기간(계약금액)
충남	대야도 어촌계	해삼	5ha		박**	1982년	경기평택		'25. 6월 계약
경북	전대현 (영덕-218)	우렁챙이	1.5ha		오**	1969년	경주시흥		'25. 6월 계약 예정
		우렁챙이	1.5ha		문**	1981년	경북영덕		'25. 6월 계약 예정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 양식장 10개소를 추가하여 총 20개소의 임대형 양식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2026년에는 다시 10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확대 외에도 양질의 양식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품종과 지역, 양식방법에 부합하는 양식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신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양식업 종류와 양식 방법, 양식 품종 및 입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 가능한 양식장과 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 매물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양식장을 임대한 귀어인이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 및 생활여건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동 세부 사업은 양식장 임대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식장 임차인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귀어·귀촌 사업과의 연계 등 신규 어업인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사업: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재발 주의 필요

-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에 대한 한시전기료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예산 규모를 과도하게 계상함에 따라 실제 집행은 예산 규모의 15%에 불과하게 나타난 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가격인상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⁴³⁾은 양식어업인에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 현액 56억 100만원 중 28억원을 집행하고 28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5,601	5,601	-	-	5,601	2,800	-	2,801	-

자료: 해양수산부

4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3440-372)

(나) 검토의견

-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고유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하여 어업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고 있음. 특히 양식업에 사용되는 농사용(乙)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월 34.2원/kWh에서 2024년 1월 56.8원/kWh, 2025년 4월 65.9원/kWh으로 상승하여 어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제유가(두바이)(\$/배럴)	63.5	52.3	69.4	96.4	82.1
유연탄(전력용연료탄)(\$/톤)	78.1	61.0	141.8	360.1	172.8
천연가스 수입가격(\$/톤)	505.4	390.1	550.8	1053.5	781.9

자료: 해양수산부

【 농사용(乙)(저압) 전기요금 변동 추이 】

구분	'22.1	'22.4	'22.10	'23.1	'23.5	'24.1	'24.4	'25.1	'25.4
전력량요금 (원/kWh)	34.2	39.1	46.5	50.3	53.0	56.8	59.5	63.3	65.9

자료: 해양수산부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세부사업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56억 100만원)이 예산안에 포함되었음.

동 사업은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해수면·내수면 양식어업인 및 수산물 부화·수산종자 생산어업인(약 1만 2,731호)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최대 44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수협에서 어업인의 신청을 받은 후 자격심사를 거쳐 한전에 통보하면, 한전에서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절차로 진행됨.

【 사업개요(양식어업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사업목적: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해수면·내수면 양식어업인 및 수산물 부화·수산종자 생산어업인(약 12,731호)
지원예산:	56억 100만원 * 440,000원 ×12,731호('22년 기준 전력사용호수)
지원한도:	1년간 호당 최대 440,000원
지급절차:	(수협) 신청서 접수·자격(양식면허 등) 확인 후 한전에 명단 및 예산(1인 44만원) 송부 → (한전) 체납 등 확인 후 고지서상 감면
기간/조건:	'24. 3~12월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주체:	수협중앙회, 한국전력공사

□ 그런데 해당 사업의 2024년 사업실시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2,481개 어가가 신청하여 그 중 2,103개 어가가 최종 지원대상으로 확정('25.6.)되었는데, 이는 당초 지원대상으로 산정한 1만 2,731개 어가의 15.2%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산도 예산현액의 50%인 2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이 집행이 부진하였던 원인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원금액의 규모(최대 44만원)가 연간 1,773만원에 이르는 양식장별 평균 연간 전기요금에 비해 작은 규모여서 양식어업인들이 신청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음.

- 양식장의 연간 전력 사용요금은 2023년 평균 1,527만원에서 2024년 1,773만원으로 246만원(16.1%) 상승하였는데, 최대 44만원의 지원액으로는 인상액의 20%를 하회하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임.

【 2023~2024년 연간 양식장 전력 사용량 및 요금 】

구분	사용호수	전력사용량(GWh)	전기요금(억 원)	평균요금(만 원)
2024년	12,581	2,861	2,230	1,773
해수면	5,502	1,506	1,169	2,125
내수면	6,366	1,232	964	1,514
종자	713	1,228	97	1,360
2023년	13,424	2,871	2,050	1,527
해수면	5,942	1,514	1,079	1,815
내수면	6,690	1,234	882	1,618
종자	792	121	89	1,124

자료: 한국전력

또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초 어업인들은 보조금 지원 구조와 관련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동 사업의 ‘정액 지원’ 방식 대신 전체 사용 전기요금 중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정률 지원’ 방식을 선호한 바 있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정액 지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처럼 동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의 규모 및 지급방식이 어업인들의 선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고, 지금까지 양식어업인 등에 대한 전기로 지원이 단기적·한시적으로 논의되어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사업 수요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해양수산부는 사업수요에 대한 지속적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수산 공익직불제: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실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어선원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관련하여 예산안 산출내역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직불금 지급의 요건 및 적정한 예산 편성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불금의 실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62억 3,300만원 중 97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1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83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⁴⁴⁾.

【 2024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산 공익직불제	106,233	106,233	-	-	106,233	97,022	821	8,390	111,806

자료: 해양수산부

4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수산 공익직불제(3460-310)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소득안정, 어업인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촉진,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충족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역사업은 총 5개로 이 중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으로 수행되는 직불제 운영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사업은 모두 지자체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며, ①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②경영이양 직불제, ③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④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있음.

【 수산 공익직불제 내역사업 구성 및 지원내용 】

구 성	지 원 내 용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 어업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내 비(非) 소규모어가 지원 * 조건불리지역(2014년~)의 경우 동 사업 내 포함
경영이양 직불	신규 어업인 유입을 위해 어업경영을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	총허용어획량(TAC), 감척 등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 지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100% 배합사료 사용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하는 양식어가 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의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2021년 51.8%, 2022년 75.6%, 2023년 72.0%, 2024년 76.6%이고, 같은 기간 동안 불용액은 각각 99억 5,800만원(2021년), 12억 8,300만원(2022년), 66억 7,200만원(2023년), 83억 9,000만원(2024년)으로 나타남.
- 2024년에는 예산현액 1,062억 3,300만원 중 970억 2,2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813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보조사업자 단계 실집행률이 76.6%, 불용액이 83억 9,000만원으로 나타남.

【 수산 공익직불제 연도별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실집행액]	[실집행률]	[실집행률]		
2021	51,479	51,479	-	-	51,479	39,009 [26,669]	75.8 [51.8]	75.8 [51.8]	2,505	9,958
2022	55,869	55,858	2,505	△8,460	49,903	48,514 [42,231]	86.9 [75.6]	97.2 [84.6]	106	1,283
2023	93,328	93,328	106	-	93,434	86,762 [67,228]	93.0 [72.0]	92.9 [72.0]	-	6,672
2024	106,233	106,233	-	-	106,233	97,022 [81,364]	91.3 [76.6]	91.3 [76.6]	821	8,390
2025	111,806	111,806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인 소규모·어선원 직불은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이나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구성됨.

그런데, ‘어선원 직불제’의 실집행률이 2023년 49.7%, 2024년 49.6%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실집행률 역시 2022년 88.4%에서 2023년 60.9%, 2024년 61.5%로 하락하여 해당 직불제를 포괄하는 소규모·어선원 직불 내역사업의 실집행률도 2022년 88.4%에서 2023년 63.4%, 2024년 70.1%로 저조하였음.

【 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직불제 유형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규모·어선원 직불	본예산	12,812	11,777	12,367	51,225	54,002	
	실집행액	9,818	10,119	10,927	32,460	37,832	
	실집행율(%)	76.6	85.9	88.4	63.4	70.1	
	- 소규모어가 직불	본예산	-	-	-	27,198	29,464
		실집행액	-	-	-	19,837	25,069
		실집행율(%)	-	-	-	72.9	85.1
	- 어선원직불	본예산	-	-	-	18,000	19,500
		실집행액	-	-	-	8,950	9,665
		실집행율(%)	-	-	-	49.7	49.6
	- 조건불리지역 직불	본예산	12,812	11,777	12,367	6,027	5,038
		실집행액	9,818	10,119	10,927	3,673	3,098
		실집행율(%)	76.6	85.9	88.4	60.9	61.5

자료: 해양수산부

□ 이 중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2023년부터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28%p 가량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처럼 해당 직불제의 집행이 저조해진 것은 매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1만 4,100명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여 그 중 5,739명만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1만 1,011명이 신청하여 4,683명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이처럼 탈락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다른 수산 직불제 및 농업·임업 분야 직불제와의 중복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의 경우 다수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신청요건에도 해당하여 두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 직불금 중 지급액이 많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원)이 선호됨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음⁴⁵⁾.

또한, 농업·임업 분야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점 역시 다수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들이 지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45) 「수산직불제법」 제21조제8호, 제9호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그 어업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연도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연도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주요 신청자격 및 요건 】

- **개 념:**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 **주요 신청자격 및 요건**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중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일 것
 - 2)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 지자체로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이 선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직불금 지급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 4)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 이수,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
- 다른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및 농업·임업 직불금과 중복수령 불가
- 지급 금액: 어가 당 연간 8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규모어가 직불, 농업·임업 분야 직불제 등 다른 직불제와 지원자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직불금의 규모가 다른 직불제 대비 낮아 매년 다수의 탈락자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급요건 또는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직불제의 필요성 및 적정 편성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지급이 시작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동 직불제의 직불금 신청·지급내역을 보면, 2023년의 경우 7,966명이 신청하여 7,458명이 지급받았고, 2024년에는 8,372명이 신청하여 7,502명이 지급받는 등 신청자 대비 탈락자의 비중은 다른 직불제 대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예산 규모가 2023년 180억원, 2024년 195억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연간 1만 5,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1인당 연간 130만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신청자 수는 7,900명에서 8,400명 이내로 편성인원과 집행인원간 차이가 발생하여 다액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어선원 직불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산출근거	실 집행	실 집행률
어선원	19,500	·15,000명×130만원×100%+행정비(직불금 1.7%)	9,665 (7,502명 지급)	49.6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신청자 수가 부족한 원인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감소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업인의 입장에서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야 하는 ‘최소 승선 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어업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족 승선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의 신청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어선원직불제 신청자격 및 요건 】

- **개 념**: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주요 신청자격 및 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어선원
 - 1)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최소 승선 일수’)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 3)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일 것
 - *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4) 어선원 직불금 신청연도에 가구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수산직불제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교육 이수,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
- 다른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 및 농업·임업 직불금과 중복수령 불가
- 지급 금액: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직불제의 신청·지급가능인원에 대한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급요건의 이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급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사업 규모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시험연구비 비목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편성 부적절

- 해양수산부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의 예산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시험연구비로의 예산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수용비와 국내·국외여비 등 반복적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적절한 비목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 확보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455억 7,300만원 중 416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⁴⁶⁾.

4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연안국과의 협력(ODA)(6133-308)

【 2024년도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안국과의 협력 (ODA)	43,647	43,647	-	45,573	41,679	2,757	1,137	44,958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사업」(이하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이라 함)과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하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이라 함)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각의 고유 수산생물(나폴레옹피쉬, 유큐마)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대화 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이 용역 발주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의 2024년도 예산으로는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에 10억 원,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에 23억 7천만 원의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반용역비 중 일부를 시험연구비로 각각 2,000만원(1,900만원 집행)과 1억 6,000만원(7,100만원 집행)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 및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비목	예산액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업·양식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	1,000	192	-	1,172	976	196	-	400
	시험연구비	-	-	-	20	19	1	-	-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일반용역비	2,370	-	-	2,210	2,113	-	97	1,670
	시험연구비	-	-	-	160	71	-	89	230

※자료 : 해양수산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210-13목)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위해 10개 세목이 통합된 비목⁴⁷⁾으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하고,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의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⁴⁸⁾하

47)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시험연구비: 10개 통합비목]

비목	세목(내역)
일용임금(110-04)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일반수용비(210-0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210-03)	피복비
임차료(210-07)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장비 리스료 등
유류비(210-08)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등에 필요한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재료비(210-1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여비(220-01/02)	국내/국외여비
고용부담금(320-09)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4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시험연구비(210-13목))

고 있으나,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과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에서 시험연구비로 세목조정한 내역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ODA 사업의 조달수수료 및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경상적인 경비로 집행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하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보임.

- 먼저,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의 시험연구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시험연구비 총집행액 1,883만원 중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1·2차년도 용역의 조달수수료로 각각 722만원, 77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조달수수료는 ODA 사업(용역)의 실시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부하는 법정수수료로서, ODA 사업의 실시에 따른 조달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의 비목인 일반용역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달수수료에 대한 예산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용역비를 시험연구비로 세목조정 후 집행한 것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안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다만,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 일반용역비 및 시험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예산항목	집행액(계)	집행내역	집행액(원)
일반용역비(210-14)	976,000,000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1차년도 완수금	192,000,000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2차년도 선금	784,000,000
시험연구비(210-13)	18,838,920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1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	7,225,700
		베트남 수산양식업 협력 사업(ODA) 2차년도 용역 조달수수료	7,758,000
		베트남ODA 사업 공동연구 현장 국외여비	3,855,220

* 자료 : 해양수산부

□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의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시험연구비 총집행액 7,123만원 중 경상적인 사무용품, 전산용품, 홍보용품, 구독료으로 총 1,763만원, 국내·국외여비 1,751만원, ODA 조달수수료 1,325만원, 시험 관련 재료비 1,515만원, 시험관련 장비운영비 및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및 267만원이 각각 집행하였는데,

사무용품 등 구입비, 국내·국외여비, ODA 조달수수료 등 4,839만원은 해당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연구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시험연구비가 아닌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양식생산성 지원 사업」 시험연구비 집행 현황 】

(단위 : 원)

예산항목	집행액(계)	집행내역	집행액(원)
시험연구비(210-13)	71,237,250	국외 및 국내여비	17,517,309
		사무(물품, 생수 등 소모품), 전산(토너), 기타 홍보물품, 신문구독료	17,638,820
		ODA사업 조달수수료	13,250,900
		시험 관련 재료구입비	15,159,121
		시험 관련 장비운영 비용	5,000,000
		시험 관련 위원회 수당	2,671,100

*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편집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시험연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직접 공동 연구(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성격) 및 배합사료 개발연구(재료비, 일반수용비 성격)의 업무추진이 어려워 시험연구비로 세목조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나,

시험연구비는 동일 세목 내에서 비목 간 전용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시험연구의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성과 탄력성을 갖춘 비목인 만큼, 그 활용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전산용품·홍보용품 구입비와 조달수수료 등의 예산부족액 충

당을 위한 시험연구비로의 예산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수용비와 국내·국외여비 등 반복적으로 시험연구비에
서 집행되고 있는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 관련 경비를 적절한 비목
에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3. 교통시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 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경상이전수입 365억 2,1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302억 1,700만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조 5,692억 2,800만원 등 1조 7,530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으로 55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조 7,864억 8,4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조 7,864억 8,4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27억 4,4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1,234억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4,918억 4,400만원 등 총 1조 7,864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209억 2,8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11,114	12,346	11,676	227	443	562
토지대여료	1,282	3,392	2,823	226	344	1,541
건물대여료	794	249	225	1	22	△569
기타관유물대여료	615	10	8	-	1	△607
정부출자수입	4,657	6,741	6,741	-	-	2,084
기타민간이자수입	3,766	1,954	1,879	-	76	△1,887
기타재산이자수입	5	-	-	-	-	△5
기타재산이자외수입	3,761	1,954	1,879	-	76	△1,882
경상이전수입	36,521	22,718	12,744	86	9,888	△23,777
벌금및과료	28	98	-	-	98	△28
과태료	299	475	322	-	153	23
과징금	62	48	17	1	31	△45
변상금	782	3,023	469	44	2,510	△313
위약금	4,019	3,982	1,507	-	2,475	△2,512
가산금	199	994	48	41	905	△151
기타경상이전수입	31,132	14,099	10,381	-	3,717	△20,75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0,217	134,983	123,416	976	10,592	△6,801
면허료및수수료	16,547	17,891	14,766	586	2,539	△1,781
항공항만수입	107,007	91,207	83,823	390	6,994	△23,184
기타잡수입	6,663	25,885	24,826	-	1,059	18,163
관유물매각대	5,938	50,553	50,549	-	5	44,611
건물매각대	-	340	340	-	-	34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667	16	16	-	-	△651
토지매각대	5,237	50,197	50,192	-	5	44,955
재고자산매각대	34	-	-	-	-	△34
세계잉여금	-	96,256	96,256	-	-	96,256
전년도세계잉여금	-	96,256	96,256	-	-	96,256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69,280	1,491,844	1,491,844	-	-	△77,436
일반회계전입금	1,569,280	1,491,844	1,491,844	-	-	△77,436
합 계	1,753,070	1,808,700	1,786,484	1,289	20,928	33,414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은 1조 5,888억 4,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719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6,608억 9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해양수산연구개발 1,036억 3,400만원, 항만개발 및 관리 1조 3,319억 7,9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54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항만개발 및 관리 942억 6,0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2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항만개발 및 관리 755억 1,8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7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4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 비	이·전용				
해양수산연구 개발	95,819	-	-	-	-	95,819	95,819	-	-
항만개발 및 관리	1,602,569	94,260	-		54,623 △54,623	1,696,829	1,450,627	101,566	144,636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54,682	232	-	-	-	54,914	53,754	338	822
합 계	1,657,251	94,492	-		54,623 △54,623	1,751,743	1,504,381	101,904	145,458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총괄 검토의견

1)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해양수산부는 향후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최소화하고,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항만개발 및 관리」⁴⁹⁾는 항만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만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의 프로그램(5000) 단위로,

2024년 예산현액 1조 6,855억 4,600만원 중 1조 4,57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352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1,600,935	85,707	△1,096	1,685,546	1,457,553	92,762	135,231	1,627,100

※해양수산부

49) 회계(기금)-프로그램: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항만개발 및 관리(5000)

(나) 검토의견

(1)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 세부사업 예산 전액 불용 부적절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⁵⁰⁾ 사업은 수리조선단지 민간투자사업⁵¹⁾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방파제 축조·진입도로 개설 등 수리조선단지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임.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개요(정부지원사업) -

- 내용 : 대형수리조선소의 안전한 공사 추진과 안정적인 부두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방파제 880m, 도로 2,987m 등 설치
 - 총사업비 : 2,244억원
 - 사업기간 : 2023년~2028년 (2년 연장 반영)
-

- 동 사업은 2023년·2024년에 기반시설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이 각각 25억 2,000만원, 8억원 편성되었으나, 민간투자방식 변경(BTO-a→BTO)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정부지원사업의 발주도 함께 지연되어 2023년·2024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50)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항만국)

51)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개요(민간제안사업)

- (사업규모) Dry Dock 1기, Floating Dock 1기, 안벽 3선석, 부지조성 30만㎡ 등
- (사업기간/방식) 공사 33개월, 운영 30년
- (총사업비/무상사용기간) 4,199억원 / 30년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4년도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800	-	-	800	-	-	800	100

※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기반시설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KDI의 민간투자방식 변경 검토와 해양수산부의 제3자 공고안 요청 등으로 사업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정부지원사업 역시 추진이 지연되었음.

- 2022년 6월 KDI의 민간제안사업 (BTO-a) 적격성조사 통과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3년도 및 2024년도 정부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 편성 이후 2022년 10월 KDI의 민간투자방식 변경 (BTO-a → BTO) 검토 요청 등으로 BTO 방식으로 제3자 제안공고 ('23.7월 ~)를 하게 됐으며, 최초제안자가 신청한 분쟁조정 절차 ('23.9월 ~ '24.2월), 공고 최종 유찰 ('24.5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 】

- '20. 10.: 민간제안서(BTO-a*방식) 접수(해수부)
 - * BTO-adjusted :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만큼 위험을 부담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 공유하는 방식
- '22. 6.: 민간제안서 검토*(KDI) ⇒ 민자적격성 확보
 - * BTO-a방식의 적격성은 확보. 다만, 수리조선 사업 특성과 정부부담액(투자위험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우려 BTO 방식 병행 검토 필요
- '22. 8.: 적격성을 확보한 BTO-a방식 제3자 공고(안) 검토 요청(→KDI)
- '22. 10.: KDI는 BTO방식으로 추진 적정성* 검토 요청(→해수부)
 - * 수리조선 민간제안사업 특징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 투자위험의 부담 취지를 감안할 때, BTO 방식이 적정
- '22. 12.: 전문기관 의견을 수용하여 BTO방식으로 추진 결정(해수부)
- '23. 7.: 민투심 심의 및 제3자 제안 공고('23.9.19. 중지, '24.2.15. 재개)
- '23. 9. ~ '24. 2.: 분쟁조정 신청(제안자, '23.9.19.), 조정거부*(기재부, '24.2.8.)
 - * 사업방식 변경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 및 결정 사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 대상이 아님
- '24. 2. 21.: 1단계 서류접수 마감, 사업제안서 미제출(유찰)
- '24. 3. 28.: 제3자 제안 재공고
- '24. 5. 27.: 1단계 서류접수 마감, 사업제안서 미제출(유찰)
- '25. 3~4월: 재정당국(기재부, KDI)과 민간투자 방식 변경 방안 등 논의
- '25. 5. 19.: 민간투자사업자 면담 결과 사업추진 의사 재확인(사업추진 방법 재검토 등)

자료: 해양수산부

-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제안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사업 방식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새만금 신항(방파제(연장) 내역사업)·기타항만 재개발(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 : 내역사업 예산 전액 불용 또는 이월 부적절

□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중 내역사업 기준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이 총 11⁵²⁾개이며, 그 중 새만금 신항 사업(방파제(연장) 내역사업)과 기타항만 재개발 사업(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었음.

【 2024년도 내역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 신항	162,800	162,800	8,988	△2,415	169,373	131,885	9,436	28,052	138,151
① 방파제(연장)	3,360	3,360	-	△2,780	580	-	-	580	37,041
부산항 신항만(1단계)	37,880	37,880	4,412	△1,800	40,492	34,168	3,680	2,644	21,312
②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	258	258	360	-	618	-	-	618	-
동해신항	32,361	32,361	5,658	△14,354	23,665	10,925	2,021	10,719	99,960
③ 관리부두 등	2,641	2,641	565	-	3,206	-	600	2,606	283
부산항	8,337	8,337	14	△5,139	3,212	302	2,430	480	4,000

52)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새만금 신항(5050-324)(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 신항만(1단계)(5050-303)(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동해신항(5050-326)(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5058-307)(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일반항(5059-302)(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북항 재개발(5061-300)(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인천북항(5050-319)(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울산신항(5050-325)(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기타항만 재개발(5061-301)(항만국)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④ 북항 파제제	5,000	5,000	-	△2,159	2,841	-	2,381	460	-
⑤ 연구조사선부두	3,000	3,000	-	△2,980	20	-	-	20	-
일반항	69,614	69,614	12,809	△4,760	77,663	68,651	4,201	4,811	98,779
⑥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 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	300	300	-	-	300	-	300	-	-
부산북항 재개발	22,926	22,926	105	4,866	27,897	24,652	436	2,809	1,106
⑦ 북항 재개발 2단계 재정지원	2,619	2,619	-	-	2,619	-	-	2,619	261
인천북항	11,100	11,100	-	1,023	12,123	11,965	100	58	3,100
⑧ 북성포구 투기장 상부 시설 조성	100	-	-	-	100	-	100	-	100
울산신항	138,762	138,762	431	3,760	142,953	142,741	-	212	55,710
⑨ 사후평가	100	100	-	-	100	-	-	100	-
기타항만 재개발	5,543	5,543	246	△1,537	4,252	3,423	240	589	7,591
⑩ 항만재개발 총사업비 산정(묘도)	200	200	-	-	200	-	-	200	-
⑪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1,000	1,000	-	△700	300	-	-	300	4,442

자료: 해양수산부

① 새만금 신항(방파제(연장) 내역사업)

□ 새만금 신항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파제(연장) 사업은 새만금 신항
항내 정온도⁵³⁾ 확보를 위한 방파제 축조를 목적으로 2024년에 3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7억 8,000만원이 전용되었고, 5억 8,000
만원이 불용되어 전액 집행되지 못함.

53) 항만의 박지(泊地,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 내에 수면의 정온(靜穩, 고요하고 평온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항만에서 하역 또는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물결의 높이(파고)를 말함. 적절한 파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대형선은 파고 0.7m~1.5m, 중·대형 선박은 0.5m, 소형선은 0.3m 이하를 기준으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설계함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 2024년도 방파제(연장)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새만금 신항	162,800	8,988	△2,415	169,373	131,885	9,436	28,052	138,151
① 방파제(연장)	3,360	-	△2,780	580	-	-	580	37,041

- 새만금 신항(방파제(연장) 내역사업)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새만금 신항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축조 목적
- 발주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내용 : 방파제 연장 250m
- 총사업비 : 828억 2,600만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8년

* 자료 : 해양수산부

- 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2022년 12월 요청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 장기화되면서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2023년에는 239억 1,900만원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99.3%인 237억 6,300만 원이, 2024년에는 전액 집행되지 못해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함.

【 방파제(연장) 사업 공사지연 경위 】

- '09. 10.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KDI)
 - * (방파제) 1단계 4.1km + 2단계 1km
- '10. 10. : 기본계획 재검토
 - * (방파제) 1단계(∼'20) 3.1km + 2단계(∼'30) 400m
- '19. 8. :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수립
 - * (방파제) 1단계(∼'30) 3.1km + 연장 400m

- '21. 6. ~ '22. 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 화물부두의 항내정온도, 항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 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파제 연장규모 조정(400→250m)
- '22. 7. :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방파제 연장 규모 : 400m → 250m)
- '22. 12. :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제출(해수부→기재부)
- '22. 12. : 설계의 적정성 검토 의뢰(기재부→KDI)
- '23. 1. ~ '23. 5. : 설계의 적정성 검토
 - * 총사업비 : (현행) 828억원 → (요구) 963억원 / 중 135억원
- '23. 6. ~ : 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중(기재부)

* 자료 : 해양수산부

② 기타항만 재개발 사업(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

□ 기타항만 재개발 사업 중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은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구역 내 용수 및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2024년에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7억원이 전용되었고, 3억원이 불용되어 전액 집행되지 못함.

【 2024년도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기타항만 재개발	5,543	246	△1,537	4,252	3,423	240	589	7,591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1,000	-	△700	300	-	-	300	4,442

-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내역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안정적인 용수(공업·생활) 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
- 발주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총사업비/사업기간 : 348억원(국비 100%) / '20년~'28년(공사기간: 30개월)
- 사업내용 :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관로 설치
- (배수지) 공업용수 V=9,800m³, 생활용수 V=200m³, (가압장) Q=18,644m³/일, (송수관로) 공업용수 육상1.2km+해상1.5km, 생활용수 육상0.4km

* 자료 : 해양수산부

- 총사업비 협의 지연(2023년 10월~현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발주가 지연⁵⁴⁾되어, 2023년에는 예산액 10억원 중 95%인 9억 5,000만 원이, 2024년에는 전액 집행되지 못해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함.

【 광양항 묘도 재개발 용수 및 배수시설 사업 등 추진 일정 변경(안) 】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안)
실시 사항	사업기간	2017 ~ 2024	2017 ~ 2028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13.11	'13.11
	사업계획서 제출	'14.5	'14.5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4.7	'14.7
	업무협약 체결	'15.2	'15.2
	실시계획 승인 고시	'17.1	'17.1
	기본 및 실시설계	'20.6 ~ '21.6	'20.6 ~ '21.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3.10 ~ '24.6

54)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시설계 결과(2021년 12월 완료) 당초 계획(2020년 1월 수립) 대비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이 되어, 타당성재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임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안)
예 정 사 항	총사업비 협의	-	'24.7 ~ '25.7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4 ~ '21.3	'25.7 ~ '25.10
	도시군관리계획	'20.4 ~ '21.3	'25.7 ~ '25.10
	계약 및 착공	'21.8	'25.10
	준 공	'24.1	'28.3

* 자료: 해양수산부

□ 두 내역사업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이·전용되거나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는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해양수산부는 향후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추진 여건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부산항 신항만(1단계)(용원수로 정비 내역사업)·울릉(사동)항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내역사업)·여수신북항(여수신북항
건축 내역사업) : 내역사업의 과도한 예산 이·전용 부적절

□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중 내역사업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이·
전용률이 70% 이상인 사업은 총 7개이며,⁵⁵⁾ 그 중 부산항 신항만(1
단계)(용원수로 정비 내역사업)·울릉(사동)항(울릉(도동)항 여객부
두 연장 내역사업)·여수신북항(여수신북항 건축 내역사업)은 이·전
용률이 각각 89.9%, 94.6%, 82.9%로 과도한 문제가 있음.

【 2024년도 편성예산 대비 이·전용률 70% 이상인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이·전용 률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부산항 신항만(1단계)	37,880	37,880	4,412	△1,800	-	40,492	34,168	3,680	2,644	21,312
(1) 용원수로 정비	9,977	9,977	1,890	△8,968	89.9%	2,899	1,470	137	1,292	5,453
새만금신항	162,800	162,800	8,988	△2,415	-	169,373	131,885	9,436	28,052	138,151
(2) 방파제(연장) 축조	3,360	3,360	-	△2,780	82.7%	580	-	-	580	37,041
부산항	9,368	9,368	42	△4,925	52.6%	4,485	1,461	2,430	594	4,000
(3) 연구조사선부두	3,000	3,000	-	△2,980	99.3%	20	-	-	20	-

55)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 신항만(1단계)(5050-303)(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새만금 신항(5050-324)(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부산항(5058-307)(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목포항(5058-311)(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울릉(사동)항(5059-305)(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여수신북항(5059-313)(항만국)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기타항만 재개발(5061-301)(항만국)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이전용률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목포항	1,405	1,405	598	△1,000	-	1,003	900	-	103	222
(4) 남항투기장 환경개선	1,405	1,405	598	△1,000	71.1%	1,003	900	-	103	222
울릉(사동)항	2,783	2,783	-	-	-	2,783	2,779	-	4	13,812
(5)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1,040	1,040	-	△984	94.6%	56	56	-	-	-
여수신북항	4,831	4,831	669	922	-	6,422	5,662	402	358	4,327
(6) 여수신북항 건축	2,892	2,892	-	△2,400	82.9%	492	89	402	1	3,939
기타항만 재개발	5,543	5,543	246	△1,537	-	4,252	3,423	240	589	7,591
(7) 또도재발용수및배수설	1,000	1,000	-	△700	70%	300	-	-	300	4,442

자료: 해양수산부

① 부산항 신항만(1단계)(용원수로 정비 내역사업)

□ 해당 사업은 부산항 신항 인근 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 9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공사 대표사의 가압류 및 공동수급체 탈퇴로 공사가 중단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하반기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89.8%에 해당하는 89억 6,800만원이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인 재해방지시설사업의 추진 시급성을 이유로 조정·사용되었음.

② 울릉(사동)항(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내역사업)

□ 해당 사업은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을 통해 기상악화 시 여객선

동시 정박 및 계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한 신속한 준공이 필요하여 2023년말 조기 준공⁵⁶⁾하여 당초 요구 예산의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2024년 예산 10억 4,000만원 중, 94.6%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이 동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인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조정·집행되었음.

③ 여수신북항(여수신북항 건축 내역사업)

□ 해당 사업은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선행공사)로 조성한 부지에 해경사무실 및 관리동 등 건축물 축조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28억 9,200만원이 변성되었으나, 이 중 82.9%에 해당하는 24억원이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되었음.

- 이 사업의 선행공사가 블록 변위⁵⁷⁾ 발생에 따른 보강공사 시행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당초 : '21.3월, 변경 : '24.12월)됨에 따라 여수신북항 건축공사 착공도 순연(당초 : '21.4월 변경 : '25.1월)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이 예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음.

□ 「국가재정법」⁵⁸⁾상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56)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내역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21억 1,000만원 이었으나 조기 준공을 위해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등 30억 6,900만원을 통해 2023년 12월 준공하였음

57) 구조물이나 지반에서 블록이 이동하거나 변형하는 현상을 의미함. 특히 보강토, 옹벽 등 토목 구조물에서 블록 변위는 침하, 균열, 벌어짐, 블록 이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구조물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자료 : 해양수산부)

5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 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총괄 내에서 매년 다수의 세부 사업 및 내역사업에서 전용 등 예산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이 어려운 세부사업 예산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당초보다 예산 투입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사업이 사후적으로 정당화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해당 사업의 계획 타당성이나 집행의 책임성, 성과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는 전체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전용 및 내역변경이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려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이하 생략)

예산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성과관리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항만보안시설 확충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및 예산 전용을 통한 연도말 자산취득비 예산 집행 지양

-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사업과 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및 집행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전용하고 전용예산 대부분을 이월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보안시설 및 장비의 자산취득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해 연간 단위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은 선박 및 항만보안 관련 국제협약 (ISPS Code) 준수 및 항만 테러예방 등을 위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보안시설을 신설하거나, 기(既) 설치된 보안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사업, ②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 ③항만보안 역량강화 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현액 77억 7,800만원 중 34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1,600만원을 이월하며, 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⁵⁹⁾.

59)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특회계-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 2024년도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항만보안시설 확충	6,718	23	1,037	7,778	3,483	4,016	279	10,673

(나) 검토의견

(1)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은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내역사업의 세사업이며, 부산·인천·울산항 등 무역항에 레이더 및 RF 스캐너, EO/IR 카메라, 전파차단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항만보안 관제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을 연결하는 정보화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32억 4,600만원 중 실시설계비 3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27억 4,00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음.

【 2024년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사업	3,246	-	-	3,246	362	2,740	144	7,768
-실시설계비(420-02)	506	-	-	506	362	-	144	387
-공사비(420-03)	2,740	-	-	2,740	-	2,740	-	7,381

※해양수산부

□ 부산·인천·울산항 등 3개 무역항의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사업은 실시 설계 6개월, 공사 10개월 등 2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여 20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후 설치공사 발주과정에서 조달청 협의 등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등 예상보다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공사비는 전액 이월되었음.

- 동 사업은 레이더, 스캐너, 전파차단 장치 등 다양한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항만보안 관제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보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소관 지방조달청에서 입찰 참가 자격 선정·담당부서 지정 등 내부검토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입찰 관련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발주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구축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사업 예산 집행현황(국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비고
	실시설계		공사		실시설계		공사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차	506	362	2,740	0			5,507	0	부산·인천·울산항
2차					387	269	1,874	0	여수광양·평택당진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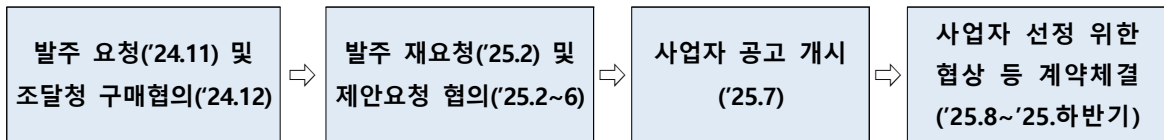
* 실시설계(6개월), 구축(10개월) 소요 등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은 해양수산부와 4개 항만공사가 50% 분담, 나머지 항만은 국비 100%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부산·인천·울산항 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은 없으나, 인천항의 경우 계약 체결('25.8.7) 하였고,

부산·울산항의 경우 조달청 공고개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 중으로, 조속히 사업자 선정을 마쳐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 설치공사를 위한 조달청 협의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 다만, 사업자 선정 후에도 설치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필요하며, 시설·장비 설치 후 시범운영 및 장비 인수시험 절차, 안티드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관제 교육이 필요할 것이므로 사업자 선정 및 후속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사업과 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및 집행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봄.

(2) 예산 전용을 통한 연도말 자산취득비 집행 및 이월 지양

□ 내역사업인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⁶⁰⁾」의 이행과 우리나라 무역항에 대한 테러예방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직접 또는 위탁받아 보안을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설치된 보안시설·장비⁶¹⁾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위해 2024년 예산으로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타 사업에서 이·전용한 10억 3,700만 원을 포함한 총 34억 8,900만 원 중 2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00만원은 이월, 4,300만 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역사업	2,440	10	1,037	3,489	2,540	906	43	2,440
자산취득비	13	-	944	957	50	906	1	13

※해양수산부

60)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규정으로, 선박과 항만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표준(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선박과 항만 시설의 보안 계획 수립 및 유지, 선박과 항만 시설에 출입하는 인원들의 신원 확인 필수, 선박과 항만 시설에 CCTV, 보안 감지 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설치의무

61) 선박 및 항만보안 관련 국제협약(ISPS Code) 준수 및 항만 테러예방 등을 위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항만시설 보안시설·장비(16종*)

* 보안울타리, 감지기, CCTV, 경비초소, 순찰차량, 방호장비(2종), 검색장비(2종), 보안등, 공공요금(3종), 소모품(탄약 등), RFID 출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프로그램 등

- 자산취득비로는 본예산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24. 12. 20. 운영개시)에 따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장비 구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4년 10월, 9억 4,400만원을 전용⁶²⁾하였고, 이 중 5,0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9억 600만원은 이월되었음.

□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준공 이후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운영장비 예산이 총사업비(공사비)에서 배제됨에 따라 필요 재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였고, X-RAY 검색대 8대 등 일부 보안장비는 수입 통관 절차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2024년 12월 운영 개시 하기 위하여 X-RAY 검색대 8대를 취득 전까지 임차·설치하여 선박 및 항만보안 관련 국제협약(ISPS Code)의 이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설명이나, 이 경우에도 X-RAY 검색대 8대에 대한 임차료가 추가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8월 기준, 2024년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9억 5,700만원 중 7억 1,000만원을 집행한 상황으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EOD

62) 전용 내역 :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입찰기간 소요로 착공 지연에 따라 집행 곤란한 공사비 및 감리비를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및 운영을 위해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보안장비구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전용

- 인천남항(5058-310) 420-03(공사비) 899백만원, 420-04(감리비) 45백만원
⇒ 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 430-01(자산취득비) 944백만원

장비(방폭담요·가방, 2,600만원)는 구매하였고, 신규 X-RAY 검색대는 2025년 5월 구매 계약 체결(선금 6억 8,400만원 집행)한 후 10월 중 설치 및 운영예정임.

□ 자산취득비는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연간 단위의 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항목이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⁶³⁾하고 있고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⁶⁴⁾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안장비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당초 예산편성되지 않은 보안장비의 취득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후 전용 예산 대

6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7. 자산취득비(430-01목)

(연간 집행계획 수립)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보임.

-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 12월 운영 개시 예정이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시 선박 및 항만보안 관련 국제협약(ISPS Code) 준수를 위한 보안시설 및 장비 구비의무에 대한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X-RAY 검색대 등 수입을 통한 보안장비의 취득 기간을 미리 예상하여 예산 확보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면밀히 준비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전용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⁶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한 예산을 전용하고 전용예산 대부분을 이월하는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보안시설 및 장비의 자산취득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해 연간 단위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일반항·포항 영일만신항·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 부적절

-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 전용 집행 등 예산집행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항 사업은 연안 해상교통 기능강화를 위해 항만기반시설 설치 및 보강, 항로준설, 기존 항만의 정비 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산항, 포항항, 동해항, 대산항, 흑산도항, 후보항, 거문도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국도항 등 10개의 일반항 사업에 대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현액 776억 6,300만원 중 686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⁶⁶⁾.

- 포항 영일만신항 사업은 제철산업 및 배후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을 지원하고, 대북방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국제·연안여객부두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66)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일반항(5059-302)

2024년 예산현액 187억 600만원 중 16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⁶⁷⁾.

□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⁶⁸⁾ 확보를 위해 남방파제(2단계)를 축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53억원 중 3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원을 불용하였음⁶⁹⁾.

【 2024년도 일반항·포항 영일만신항·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일반항	69,614	12,809	△4,760	77,663	68,651	4,201	4,811	98,779
포항 영일만신항	18,671	35	-	18,706	16,583	40	2,083	16,217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10,200	-	△4,900	5,300	3,105	595	1,600	9,180

67)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포항영일만신항(5050-322)

68) 정온수역(Calm Water Area) : 항구나 해양 시설 주변에 위치한 파도가 적고 안정적인 수역을 의미

69)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나) 검토의견

- 일반항 사업의 내역사업인 「포항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사업」, 포항 영일만신항의 내역사업인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 부두 축조사업」,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포항영일만신항 남방과제 2단계 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해야 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같은 내역사업 내 다른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해 기본조사설계비를 집행하였음.

【 2024년도 기본조사설계 미 반영된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비목	예산액(A)	전용액(B)	예산현액(A+B)	전용(중액) 사유
일반항	포항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실시설계비	420-02	650	△50	600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 수행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포항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설계 경제성검토	420-01	-	50	50	
포항영일만신항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 부두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비	420-02	1,100	△102	998	관계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설계 경제성검토 업무 수행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 부두 축조 재해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검토	420-01	-	102	102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포항영일만신항 남방과제 2단계 축조 공사비	420-03	10,000	△3,000	7,000	관계 규정에 따라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필요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
	포항영일만신항 남방과제 2단계 축조 보상비	420-01	-	3,000	3,000	

※ 해양수산부

□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적용되는 비목⁷⁰⁾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⁷¹⁾에 따라 설계 시 설계경제성검토(VE)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면적이 5천㎡ 이상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⁷²⁾에 따라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시행하여야

70)<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5. 설계비(420-01 · 420-02목)

1. 적용대상

□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설계공모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19. 투자 사업 2. 세부지침

턴키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에 계상

7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2. 개발사업

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⁷³⁾에 따라 일괄입찰 공사의 낙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기본조사설
 계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을 통해 집행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① 일반항 사업(포항신항 7, 8부두 임항창고 사업)

□ 일반항 사업의 내역사업인 포항신항 7, 8부두 임항창고 사업은 항
 만 환경개선을 위해 포항신항의 7, 8부두에 임항창고 총 2동을 건
 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1,500만원 이월,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포항신항 7, 8부두 임항창고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일반항	69,614	12,809	△4,760	77,663	68,651	4,201	4,811	98,779
포항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사업	650	-	50 △50	650	460	115	75	5,970

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2)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7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 포항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신축 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구분	포항 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신축							
건립위치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번지,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번지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							
사업규모	창고 2동(3,300㎡, 6,600㎡)							
총사업비	159억원(국비 159억원, 지방비 -억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이후	총 계
	국비	-	650	5,300	-	4,995	4,995	15,940
예산집행	연도	교부액(교부현액)				실집행액		
	2023	-				-		
	2024	650				460		
	2025	5,300				-		
	2026	-				-		
	2027	-				-		
건립일정	당초계획				실제현황(2025년 6월 기준)			
	2024.8.~2025.7.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4.8.~2025.9.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5.9.~2026.9.	토목 및 건축공사			2025.9.~2026.9.	창고 부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		

※ 해양수산부

□ 그런데, 포항신항 7·8부두 임항창고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야 하나, 이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420-01)가 편성되지 않아 실시설계비(420-02)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여 경제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음.

-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으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 경제성검토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실시설계 및 공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

시설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포항영일만신항(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

□ 포항영일만신항 사업의 내역사업인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은 소형선부두 이전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기능의 도입을 위해 소형선부두 축조(180m), 어항방파제 증고(140m), 배후부지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에 11억원이 편성되어 9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900만원 전용, 1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포항영일만신항	18,671	35	-	18,706	16,583	40	2,083	16,217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	1,100	-	102 △102	1,100	930	29	141	1,250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구분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
건립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일원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업기간	2024년~2027년(3년)
사업규모	소형선부두 축조(180m), 어항방파제 증고(140m), 배후부지 정비 1식 등
총사업비	194억원(국비 194억원)

구분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사업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이후	총 계
	국비	-	930	1,280	16,037	1,153	-	-
예산집행	연도	교부액(교부현액)				실집행액		
	2023	-				-		
	2024	1,100				930		
	2025	1,250				13(‘25.6월 말 기준)		
건립일정	당초계획				실제현황(2025년 6월 기준)			
	2024.03.~2025.05.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4.06.~2025.06.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5.09.~2027.07.	토목공사			2025.10.~2027.08.	토목공사		

※ 해양수산부

□ 그런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 용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면적 5천㎡ 이상)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420-01)가 편성되지 않아 실시설계비(420-02)에서 1억 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으로 인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경제성검토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시설계 및 공사 등 후속조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설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③ 포항영일만신항(1단계)(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남방파제 2단계 사업은 국제여객부두 및 해경부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남방파제(2단계, 1.3k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예산액 102억원 중 49억원 전용되어 예산현액 53억원 중 31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9,500만원 이월, 16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일괄입찰 방식⁷⁴⁾으로 추진되었음.

【 2024년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10,200	-	△4,900	5,300	3,105	595	1,600	9,180
남방파제 2단계	10,200	-	△7,900 3,000	5,300	3,105	595	1,600	9,180

74) “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 함]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의미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 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구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 사업							
건설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일원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2024년~2028년(4년)							
사업규모	남방파제 1.3km 축조							
총사업비	3,825억 원(국비 3,825억 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이후	총 계
	국비	-	3,105	9,180	78,500	146,971	144,757	382,513
예산집행	연도	교부액(교부현액)			실 집행액			
	2023	-			-			
	2024	3,105			3,105			
	2025	9,180			1,264(‘25.6월말 기준)			
건설일정	당초계획				실제현황(2025년 6월 기준)			
	2024.05.~2025.03.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4.05.~2025.03.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5.05.~2029.02.		토목공사		2025.08.~2029.05.		토목공사	

※ 해양수산부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낙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 보상비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동 내역사업 추진 시 설계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지 않아, 공사비에서 3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일괄입찰 공사의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진행시 입찰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미리 설계를 한 후 입찰하여야 하는데, 입찰자로서는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낙찰탈락

자의 설계보상비를 일부 보상하도록 하여 입찰자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입찰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임.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입찰 참여기업(탈락자)이 보상비를 늦게 받게 되어 업체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입찰 참여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사비에서 전용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상하지 못해 예산안 작성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상기 내역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사전 검토 미흡 및 업무 착오로 인해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닌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입찰 참여기업(탈락자)이 보상비를 늦게 받게 될 경우 업체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동일 내역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 대규모 국책건설사업의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단계로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기본조사설계비가 편성되지 않아 동일 사업내 다른 비목으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전용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편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미편성 후 전용 집행 등 예산 집행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3) 부산항 :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해양수산부는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산항 사업」은 항만과 선박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연구 및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북항 파제제 설치, 연구조사선 및 해경 소형선부두 확충, 용호부두 월파방지시설 설치, 외곽시설 안전성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 2024년 예산현액 44억 8,500만원 중 14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⁷⁵⁾

【 2023년도 부산항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산항	9,368	42	△4,925	4,485	1,461	2,430	594	4,000
북항 파제제	5,000	-	△2,159	2,841	-	2,381	460	-
연구조사선부두	3,000	-	△2,980	20	-	-	20	-

* 자료 : 해양수산부

75)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특회계-부산항(5058-307)

(나) 검토의견

□ 부산항 사업 중 내역사업인 「북항 파제제⁷⁶⁾ 사업」은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공선 대체 계류지 조성 및 청학동 배후시설물 피해예방을 통한 항만시설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50억원이나 전액 집행하지 못함.

【 북항 파제제 내역 사업개요 】

(단위 : 백만원)

구분	파제제 사업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북빈물양장 대체부두 전면 해상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사업기간	2022 ~ 2029						
사업규모	파제제 400m 등						
총사업비	49,165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총 계
	국비 (백만원)	2,300	2,500	5,000	-	39,365	49,165
위치도 및 평면도							
예산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2022	2,300(2,300)		1,772(1,772)			
	2023	2,500(238)		132(132)			
	2024	5,000(2,841)		-(-)			

* 자료 : 해양수산부

76) 파제제는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한 정박과 항내 정온 유지(파도나 해류의 영향을 줄여 항만내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함)를 위해 설치하는 방파용 구조물임. 특히 태풍이나 강풍 등 악천후 시 선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만 시설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 또 다른 내역사업인 「연구조사선 부두 내역 사업」은 세계적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양에 관한 연구·과학·조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조사선 전용부두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30억원이나 전액 집행하지 못함.

【 연구조사선 내역 사업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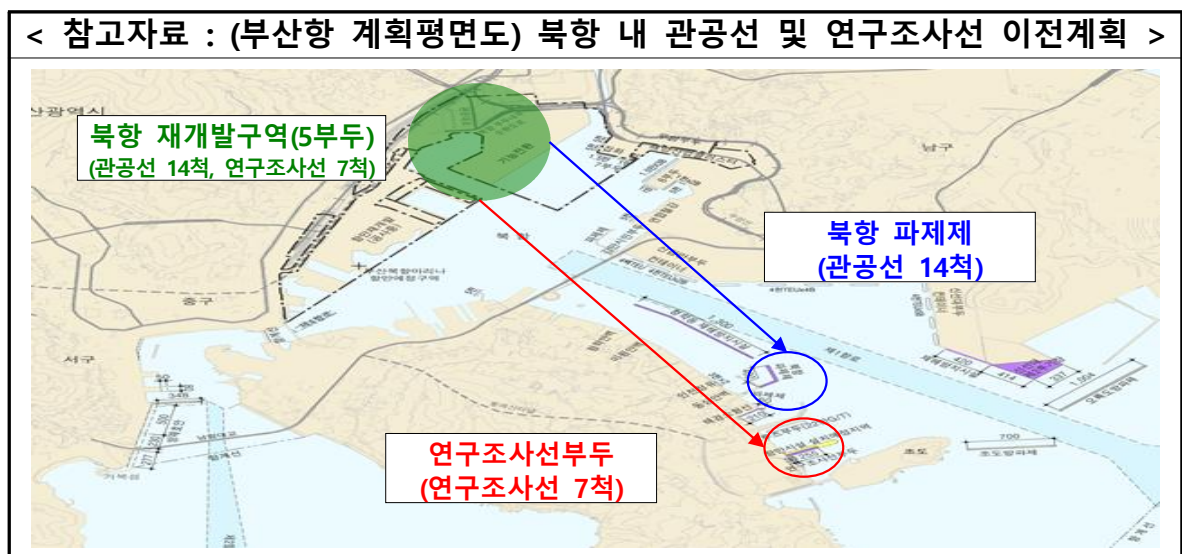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파제제 사업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아미르공원 전면해상 일원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사업기간	2022 ~ 2029						
사업규모	부두 축조 285m 등						
총사업비	49,760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총 계
	국비 (백만원)	2,243	2,500	3,000	-	42,017	49,760
위치도 및 평면도							
예산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2022	2,243(2,243)			1,737(1,737)		
	2023	2,500(209)			82(82)		
	2024	3,000(20)			-(-)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처럼 두 내역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것은, 북항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계류 중인 소형선 및 관공선의 대체 계류지(파제제 및 연구조사선 부두) 조성과 항만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파제제 건설을

목적으로 2022년도에 설계에 착수하였으나, 2022년부터 사업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해양종합공원 등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파제제 및 연구조사선 부두 등 항만시설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2023년부터 사업 집행이 부진하게 된 데에 기인함.



* 자료 : 해양수산부

□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에 두 내역사업에 대해 각각 50억 원과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집행이 어려워지자, 일부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이월하면서 해당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북항 파제제 및 연구조사선 부두 내역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북항 파제제	5,000	-	△2,159	2,841	-	2,381	460	-
연구조사선부두	3,000	-	△2,980	20	-	-	20	-

*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예산 요구 당시 부산항 북항 5부두가 “2030 부산 엑스포 박람회” 예정지에 포함됨에 따라, 박람회 부지 확보를 위해 북항에 계류 중인 소형선 및 관공선의 부두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라 파제제 및 연구조사선 부두 조성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2024년도 예산에 공사 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 엑스포 유치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이후, 사업의 시급정보다는 지역 수용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⁷⁷⁾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민 반대가 지속됨에 따라 2024년 공사 발주는 결국 어려웠다는 입장임.

【 주민들의 사업 반대 현황 】

※ 설계 착수 이후, 영도지역 재정사업(파제제, 연구조사선부두 등) 추진반대를 위한 지역 단체 출범* 및 사업반대 입장 표명(반대시위 및 진정서** 제출 등) 지속

* 영도 바다오염 및 경관저해시설 설치반대 추진위원회('23.5.3. 출범, 약 20여명)

** 바다오염 및 친수공간을 훼손하는 영도지역 사업 전면철회를 위한 장관 면담요구(17천명 반대서명)

자료: 해양수산부

77) 6차례 간담회('23.8, 11, '24.7, 9, 10, 12) 실시 등 주민 요구사항(친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을 줬으나 최종 미협의를되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

※ 간담회('25.1) 주요 의견

- (반대추진위원회) 북빈대체부두 선박 이전, 안벽(동삼,청학) 접안 기능 폐쇄 및 친수공간 조성을 조건으로 해양클러스터부두 동의 가능
- 오랜 세월 무분별한 선박 접안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영도 주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어야 함

□ 이와 같이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시급성 또는 필수적 경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겠으나, 2024년도 두 내역사업 예산 80억 원 중 64.2%인 51억 3,900만 원을 다른 내역사업 또는 타 사업으로 전용⁷⁸⁾하여 집행한 것은 그 규모 면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회가 의결한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집행하는 사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항 파제제 내역 사업 이·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사유
북항 파제제	△2,159	⇒	전용		
			부산북항 재개발(5061-300)	△1,886	부산북항 지하차도 공사비 (공사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을 위한 추가 공사비 소요)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5064-300)	△59	여청도 AIS기지국 기능개선
			부산항(5058-307)	△214	용호부두 월파방지 건설 공사비

【 연구조사선 부두 내역 사업 이·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사유
연구조사선 부두	△2,980	⇒	전용		
			부산북항 재개발(5061-300)	△2,980	부산북항 지하차도 공사비 (공사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을 위한 추가 공사비 소요)

* 자료 : 해양수산부

78)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북항 지하차도 공사비로의 전용은 지하차도 공사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을 위한 추가 공사비로 예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급한 사유로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두 내역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북항 5부두) 추진에 따라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공선의 이전과 영도 해양 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연구조사선 접안을 위한 전용부두 조성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에 해당되나,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민원이 해소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파제제 사업)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연구조사선 부두 사업)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 사업 모두 계획된 준공 시점보다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전 행정절차 준비가 필요해 보임.

【 북항 파제제 내역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

(2025년 5월말 기준)

사업절차	최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기본계획 수립	'20.12	'20.12	
기본 및 실시설계	'22. 3~'23. 3.	'22. 3~'23.12.	영도지역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이견 발생으로 지연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등	'22. 3~'23. 4.	'22. 3~'23.12.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동반 지연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일반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22. 5.~'23. 5.	'22. 5.~'23.12.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동반 지연
공사착공	'23.10~'26.10	미실시	영도지역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이견 발생으로 지연
완공	'26.10	미실시	

자료: 해양수산부

【 연구조사선 부두 내역 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

(2025년 5월말 기준)

사업절차	최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기본계획 수립	'20.12	'20.12	
기본 및 실시설계	'22. 3~'23. 3.	'22. 3~'23.12.	영도지역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이견 발생으로 지연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등	'22. 3~'23. 4.	'22. 3~'23.12.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동반 지연 *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재해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일반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22. 5~'23. 5.	'22. 5~'23.12.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동반 지연
공사착공	'23.10~'26.10	미실시	영도지역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이견 발생으로 지연
완공	'26.10	미실시	

자료: 해양수산부

□ 결론적으로, 2024년도 파제제 및 연구조사선 부두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총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이 중 64.2%에 해당하는 51억 3,9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국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 또는 전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편성은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재산수입 3,400만원, 경상이전수입 38억 1,7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 경상이전수입액 증가 등으로 13억 800만원이 증가한 27억 8,8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27억 8,800만원 중 재산수입으로 4억 2,0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23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23억 7,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정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4	520	420	-	100	386
기타재산이자수입	27	520	420	-	100	393
기타재산이자외수입	7	-	-	-	-	△7
경상이전수입	3,817	4,640	2,369	-	2,271	△1,448
가산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817	4,639	2,369	-	2,271	△1,448
합 계	3,851	5,159	2,788	-	2,371	△1,063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632억 5,100만원으로 증감없이 예산현액 632억 5,100만원과 동일함.

□ 예산현액 중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18억 7,9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41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은 없으며, 해운산업 선진화 538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1,879	-	-	-	-	21,879	21,879	-	-
해운산업 선진화	41,372	-	-	-	-	41,372	35,990	-	5,382
합 계	63,251	-	-	-	-	63,251	57,869	-	5,382

* 자료 : 해양수산부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산수입 5억 5,300만원, 경상이전수입 71억 8,4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액 감소로 42억 7,200만원이 감소한 34억 6,5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34억 6,5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20억 3,800만원, 재산수입으로 2억 3,500만원 등 총 22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해 11억 9,3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553	362	235	-	127	△318
기타재산이자수입	553	362	235	-	127	△318
경상이전수입	7,184	3,104	2,038	-	1,066	△5,146
기타경상이전수입	7,184	3,104	2,038	-	1,066	△5,146
합 계	7,737	3,465	2,273	-	1,193	△5,464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5,037억 6,200만원으로 전년이월 221억 4,500만원으로 인해 예산현액 5,259억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중 해양환경보전 1,195억 2,1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426억 6,6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2억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28억 7,1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2,906억 6,100만원, 항만개발 및 관리 368억 1,7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6억원, 어촌어항활성화 27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어촌어항활성화 39억원, 해양환경보전 10억 8백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해양환경보전	121,085	-	-	-	-	121,085	119,521	556	1,008
해운산업 선진화	42,949	-	-	-	-	42,949	42,666	-	283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60	1,200	-	-	-	1,560	1,200	360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2,871	-	-	-	-	22,871	22,871	-	-
어촌어항활성화	276,403	20,945	-	-	-	297,348	290,661	2,786	3,900
해양수산 연구개발	227	-	-	-	-	227	227	-	-
항만개발 및 관리	36,817	-	-	-	-	36,817	36,817	-	-
해양수산행정 지원	3,049	-	-	-	-	3,049	3,049	-	-
합 계	503,761	22,145	-	-	-	525,906	517,013	3,702	5,191

* 자료 : 해양수산부

6. 수산발전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4년 수산발전기금은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 6,264억 6,800만원, 정부내부수입 1,000억원, 여유자금회수 1,169억 3,200만원 등 총 8,434억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 결정액은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 243억 3,500만원, 정부내부수입 1,000억원 감소 및 여유자금 회수 1,594억 200만원 증가 등으로 350억 6,700만원 증가한 8,784억 6,700만원이었음.
- 징수결정액 중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으로 6,021억 3,300만원, 여유자금 회수 2,763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 수입(법정부담금 등)에서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 160억 2,500만원, 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3백만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음

【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0,860	17,538	17,531	-	7	6,671
기타민간이자수입	6,645	7,017	7,017	-	-	372
기타재산이자수입	4,215	10,521	10,514	-	7	6,299
경상이전수입	63,861	86,680	70,659	3	16,018	6,798
징계 부과금 등	-	85	-	-	85	-
가산금	20	247	6	-	241	△14
위약금	276	595	595	-	-	319
법정부담금	60,040	79,755	64,358	3	15,395	4,318
기타경상이전수입	3,525	5,998	5,701	-	297	2,17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000	10,695	10,695	-	-	5,695
면허료및수수료 등	5,000	10,695	10,695	-	-	5,695
관유물매각대	112,112	105,037	105,037	-	-	△7,075
재고자산매각대	112,112	105,037	105,037	-	-	△7,075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34,635	398,211	398,211	-	-	△36,42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34,635	398,211	398,211	-	-	△36,424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16,932	276,334	276,334	-	-	159,402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1,053	1,053	-	-	1,0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6,932	275,282	275,282	-	-	158,350
정부내부수입	100,000	-	-	-	-	△100,000
기금예탁 원금	-	-	-	-	-	-
기금예탁금이자	-	-	-	-	-	-
기금예수금	100,000	-	-	-	-	△100,000
합 계	843,400	894,495	878,467	3	16,025	35,067

* 자료 : 해양수산부

2) 지출결산

-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은 8,43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 금액 38억 6,600만원이 반영되어, 계획현액이 8,472억 6,6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회계연도 중 불용전망 사업비를 활용하여 어업인소득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음.
- 지출계획 현액 8,472억 6,600만원 중 해양환경보전 등 사업의 일반 지출로 6,308억 8,000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2,475억 8,700만원 등 총 8,784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양환경보전 160억 8,8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46억 9,600만원, 수산식품고부가가치 49억 5,400만원,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785억 3,900만원, 어업인소득안정지원 786억 7,400만원, 수산행정 100만원, 기금거래 20억원 등 총 1,688억 6,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4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 획	계 획 변 경				계 획 현 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사용	이·전용				
해양환경보전	73,488	3,848	-	-	-	77,336	56,552	16,088	4,696
수산물고부가가치화	132,401	-	-	-	-	132,401	127,447	-	4,954
수산물유통및 안전관리	445,333	-	-	-	-	445,333	366,749	45	78,539
수산자원관리 및조성	15,495	-	-	-	-	15,495	15,495	-	-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135,126	18	-	-	32 △32	135,144	56,470	-	78,674
원양협력	7,500	-	-	-	-	7,500	7,500	-	-
수산행정	668	-	-	-	-	668	667	-	1
기금간거래 (공자기금예탁)	2,000	-	-	-	-	2,000	-	-	2,000
여유자금운용	31,389	-	-	-	-	31,389	247,587	-	-
합 계	843,400	3,866	-	-	32 △32	847,266	878,467	16,133	168,864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양폐기물 정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사용어구에 대한 반납장소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실행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항만 등 주요 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 어구보증금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⁷⁹⁾

2024년 예산현액 482억 2,900만원 중 46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4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8,229	48,229	-	-	48,229	46,871	-	1,358	46,341

자료: 해양수산부

79)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

(나) 검토의견

- ☐ 최근 사용 후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로 인하여 해양환경 훼손, 수산자원 감소, 선박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폐어구 수거·처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전체 해양쓰레기 중 폐어구 방치량 추정치(2019년) 】

구 분		방치량(톤)	비율(%)
해안쓰레기	육지부 자연해안	4,168	2.8
	육지부 인공해안	1,147	0.8
	도서부	22,680	15.3
	소계	27,995	18.8
침적쓰레기	해역(폐어구)	25,206 ¹⁾	16.9
	양식장	89,771	60.4
	소계	114,977	77.3
부유쓰레기	부유	5,749	3.9
합 계		148,721	100.0

주1)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 작성 당시 기준으로, 이후 5년간 연간 약 5천톤씩 방치되어 2024년 기준 현존량은 5만톤으로 추정됨

자료: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회수·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수산업법」에 근거하여⁸⁰⁾ 2024년 1월부터 통발어구를

80) 「수산업법」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상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에 일정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의 어구를 판매한 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구의 자발적인 반납·회수를 촉진하려는 취지임.

【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개요 】

구분	어구부표 보증금제
추진배경	○ 어구·부표의 유실·투기를 방지하는 데 규제적 수단은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보증금)할 실효적 수단이 필요
사업내용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환급
추진체계	○ 표식부착 및 보증금 납부 → 어구 사용 및 반납(어업인) → 반납된 어구 관리·처리(지자체) → 보증금 환급(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액	○ 통발종류별 보증금액은 연구용역,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어구가 투기되지 않고 육상으로 회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 스프링: 1,000원, 원형·반구형: 2,000원, 사각·붉은대게: 3,000원
회수관리	○ 수협 및 11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어구 회수(반납)가 원활하도록 전국 184개소(상시·수시) 폐어구 반납장소 지정·운영 추진 * '24년 기준, 184개소 중 85개소(46%) 운영 → '25.4월 기준 94개소(51%) 운영
보증금관리센터	○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등 어구보증금관리 업무수행 * '23.3.22.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한국수산자원공단) * 보증금관리시스템: 금융기관 CMS와 연계한 보증금 부과, 환급, 미환급금 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해양수산부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내역사업인 ‘어구보증금제 운영’은 이러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증금관리센터 운영 등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실제 반납어구의 수거·처리나 반납장소 운영, 보증금제 실시 이전에 판매된 기존 어구에 대한 교체사업(수매) 등은 지자체 경상보조의 형태로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지구별수협에서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총 73억 6,200만원 중 58억 8,200만원이 실집행(79.8%)되었으나, 지자체에 지급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는 19억 9,8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이 실집행(12.4%)되어 실제 어구의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11개 지자체 중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지자체가 4곳이고, 나머지 지자체의 실집행률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어구보증금제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부산광역시	223	223	223	-	223	7	-	216	3.1
인천광역시	108	108	108	-	108	-	108	-	-
울산광역시	78	78	78	-	78	-	77	1	-
경기도	30	30	30	-	30	18	5	7	60
강원특별자치도	233	233	233	-	233	86	147	-	36.9
충청남도	117	117	117	-	117	9	74	34	7.7
전북특별자치도	32	32	32	-	32	7	-	25	21.9
전라남도	456	456	456	-	456	79	367	10	17.3
경상북도	178	178	178	-	178	-	156	22	-
경상남도	513	513	513	-	513	41	346	126	8
제주특별자치도	30	30	30	-	30	-	-	30	-
계	1,998	1,998	1,998	-	1,998	247	1,280	471	12.4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집행이 부진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① 반납장소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흡, ② 어구 반납수요의 저조로 인한 구매비용 등 미집행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먼저 반납장소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당초 어구의 원활한 반납 및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 및 지구별수협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하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총 184개소의 반납장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기준 계획된 반납장소 중 실제 운영된 곳은 85개소 (46%)이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94개소(51%)만이 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기존 집하장의 경우 이미 해양폐기물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어구 반납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고, 신규 반납장소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반납장소 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임.

- 신규 반납장소 개설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부지확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임.

이처럼 사업 실시 당시 반납장소의 가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일부 미흡하여 보조사업의 집행이 일부 부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반납장소 확보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각 지자체들은 지구별수협에 반납장소 운영, 어구 수거 및 처리 등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또는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별수협(70개) 중 반납장소를 확보한 곳은 25개 뿐으로, 나머지는 반납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39개), 임시보관(6개)에 그치고 있어 반납장소가 조기에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임.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기존의 통발어구 외 자망 등 다른 어구로도 보증금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므로, 지자체 및 수협에서 반납장소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마련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구별수협 반납장소 보유 현황 】

지역	지구별수협 수 (a)	집하장보유 (b)	미보유	임시보관	보유율 (b/a)
경인	5	1	3	1	20.0
강원	9	4	5	-	44.4
충남	8	4	4	-	50.0
전북	4	2	2	-	50.0
전남	14	5	6	3	35.7
경북	8	4	4	-	50.0
경남·울산	14	2	11	1	14.3
부산	2	-	2	-	0.0
제주	6	3	2	1	50.0
합 계	70	25	39	6	35.7

자료: 해양수산부

□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보증금제 실시 이전에 판매된 기존 어구를 보증금제 적용 어구로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하여 어업인으로부터 기존 어구를 매수하기 위한 구매비용을 지자체 보조금의 일부로 편성하였는데, 어업인들이 기존 어구를 통상적인 내구연한(3년)보다 장기간 사용하는 등으로 반납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구매비용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점도 집행실적 저조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구에 대한 반납수요를 면밀히 확인하여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¹⁾

81) 2024년 어구보증금제도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제도 참여에 따른 보증금 부과, 통발 유실 우려 및 폐통발 반납 불편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2)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이 총사업비 협의 등 실시설계 지연으로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공사 추진 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처보전,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69억 9,000만원 중 76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60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⁸²⁾.

【 2024년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23,142	23,142	3,848	-	26,990	7,613	16,088	3,289	5,260

82)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1065-304)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실태 조사, 해양생물 보전·복원 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재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산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현액 199억 3,000만원 중 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0억 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건립 이후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생물의 보전 및 복원 연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및 사후 관리, 유해해양생물 등 법정관리 대상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포함한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의 개선 및 복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개요 】

구 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사업
사업목적	해양생물 종복원·증식 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해양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주요기능	① 법정관리 해양생물 관리 정책 수립 지원 ② 해양생물 복원·증식 연구 ③ 해양동물 구조·치료·재활·방류 총괄 관리 ④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증진
건립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155-6 외 6필지
사업규모	연면적 9,351㎡ / 지하1층, 지상2층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총사업비	48,896백만원(국비 100%)
사업내용	고래류 치료시설, 바다거북류 사육시설·산란장 등
조직도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내역사업은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중간단계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관련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에는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예산이 대부분 이월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 약 84%에 해당하는 32억 3,4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등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년도	예산액 (A)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F)	불용액 (G)
2021	200	-	200	188	-	12
2022	1,650	-	1,650	18	1,632	-
2023	3,573	1,632	5,205	1,357	3,848	-
2024	16,082	3,848	19,930	618	16,078	3,234
2025	1,000	16,078	17,078	242	-	-

* 자료 :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2024년 12월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관련한 인·허가 또한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착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2025년 8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사업 진행 상황 】

- '21.03.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21.3~11)
- '24.04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부지 무상·사용협약 체결
- '22.05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총사업비 신규 등록(총사업비 374억원)
 - * 사업부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영덕군 병곡면 영리 155-6외 6필지, 31,775m²)
- '22.12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실시설계용역 착수('22.12~)
- '24.03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총사업비 증액(총사업비 439억원)
- '24.12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총사업비(489억원) 확정(총사업비관리과)
- '24.12.27 : 관련 인·허가 완료(건축허가, 해역이용협의 등)

* 자료: 해양수산부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그간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건립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건축공사 추진 시에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음.

3) 수산장비 구입지원(용자): 용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집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자신청부터 실제 수산 장비 구매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업수요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장비 구입지원(용자)」은 어업인 등에게 수산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어업인 경비절감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기자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⁸³⁾

2024년 예산현액 16억원 중 8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⁸⁴⁾

【 2024년도 수산장비 구입지원(용자)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산장비 구입지원(용자)	1,600	1,600	-	-	1,600	801	-	799	1,600

자료: 해양수산부

83)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수산장비 구입지원(용자)(3465-302)

84) 2024년도 예산액은 35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평균용자신청액 57백만원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 (35명×57백만원×80%)으로 산출되었음.

(나)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어업인들이 수산장비를 구입할 때 용자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용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를 지원받으며(자부담 20%),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초과 지원이 가능함.

지원대상 장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⁸⁵⁾에 있는 어업용기자재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산기자재를 포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장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85) [참고자료] 참조

【 2024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산장비 구입시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사업기간:	2015년 ~ 계속
지원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 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어업인(개인) 2.0%, 조합 등 3.0%
지원한도: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에 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지원대상:	수산관련 법령*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용도제한:	융자금은 수산장비(신제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 불가
사업절차:	해양수산부 (총괄) ⇒ 지자체 (모집공고) ⇒ 지자체·해수부 (대상 선정) ⇒ 수협은행 (융자지급) ⇒ 수협중앙회 (정산보고)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에는 14억 8,400만원(실집행률 52%)을, 2022년에는 14억 5,100만원(50.9%)을, 2023년에는 17억 7,300만원(62.2%)을 실집행했고, 2024년에는 평년보다 감소한 16억원이 편성되어 그 중 8억원(실집행률 50%)을 실집행하였음.

수혜를 받은 어업인의 수도 2021년 39명, 2022년 38명, 2023년 34명, 2024년 23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최근연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2,850	2,850	-	-	2,850	2,850 [1,484]	100	100	-	-
2022	2,850	2,850	-	-	2,850	2,850 [1,451]	100	100	-	-
2023	2,850	2,850	-	-	2,850	1,773 [1,773]	62	62	-	1,077
2024	1,600	1,600	-	-	1600	801 [801]	50	50	-	799
2025	1,600	1,600	-	-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의 융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매년 신청 인원은 예산 산출 시 추계 인원보다 많았으나, 2024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융자 포기 건수가 실행 건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운영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들이 융자를 신청한 후 수산 장비 구입을 미루다가 뒤늦게 융자를 포기하여 이후 신규 신청자를 찾지 못해 융자 실행 기간 부족으로 융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점, 신청자들 중 담보 부족이 확인되어 융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던 점 등이 집행 부진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임.

【최근연도 수산장비 구입지원(용자) 사업 신청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예산산출시 수요	용자신청인원	용자실행인원	평균지원액 (천원)	포기인원	포기 사유
2021년	60	82	39	38,051	43	구입시기 변경 담보부족 등
2022년	60	89	38	38,184	51	구입시기 변경 담보부족 등
2023년	60	70	34	52,147	36	구입시기 변경 담보부족 등
2024년	35	42	23	34,826	19	구입시기 변경 담보부족 등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및 담보 부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지침 개정을 통하여 신청자 1인당 용자한도액을 증액(1억원→2억원)하는 한편, 용자 실행 시기가 빠른 경우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용자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으로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용자 신청 인원 대비 포기 인원이 상당히 많고, 최근 연도 평균 지원액도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한도액 증액 또는 용자기간 연장 제한 등의 방안은 해결책의 일부분으로 보여짐.

□ 오히려 해양수산부는 일단 용자가 신청되면 이후 신청인이 수산 장비 구매를 이루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용자를 신청한 자의 담보 부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연말에 뒤늦게

신규 신청을 받게 되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지원대상 장비에 거의 모든 수산기자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선정하는 장비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매년 용자실행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자신청 후 실제 수산장비를 구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용자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자신청자가 실제 용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규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수요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사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